분 류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건 축	
일 반 도	A	001	도면목록표-1	NONE
		002	도면목록표-2	NONE
		005	위치안내도	NONE
		00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NONE
		011	사업개요-1	NONE
		012	사업개요-2	NONE
		013	단지배치도	1 / 1,000
		014	시설물 및 지반층 배치도	1 / 1,000
		015	인동거리 배치도	1 / 1,000
		016	대지 종,횡단면도	1 / 800
		021	지상 교통체계도	1 / 1,000
		022	지하 교통체계도	1 / 800
		03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도-1	NONE
		03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도-2	NONE
		03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도-3	NONE
		034	(주민공동시설) 비주거 화장실 전개도	1 / 60
		035	(경로당) 비주거 화장실 전개도	1 / 60
		041	실내 재료마감표 - 1	NONE
		042	실내 재료마감표 - 2	NONE
		043	실내 재료마감표 - 3	NONE

분 류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051	(주거)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1	NONE
		052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2	NONE
		053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3	NONE
		054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4	NONE
		055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5	NONE
		056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6	NONE
		057	(비주거)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1	NONE
		058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2	NONE
		059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3	NONE
		060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4	NONE
		061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5	NONE
		062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6	NONE
		071	84형 단위세대 면적산출 근거표	1 / 200
		072	(101동) 면적산출 근거표-1	1 / 400
		073	면적산출 근거표-2	1 / 400
		074	(102동) 면적산출 근거표-1	1 / 400
		075	면적산출 근거표-2	1 / 400
		076	(103동) 면적산출 근거표-1	1 / 400
		077	면적산출 근거표-2	1 / 400
		078	(104동) 면적산출 근거표	1 / 400
		079	(지하주차장) 면적산출 근거표	1 / 800
		080	(부대시설) 면적산출 근거표	1 / 200
단 위 세 대	A	101	(기본형) 84형 단위세대 평면도	1 / 80
		102	(확장형) 84형 단위세대 평면도	1 / 80

분 류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전 체 평 면 도	A	201	(101동) 지하 2층 평면도	1 / 200
		202	지하 1층 평면도	1 / 200
		203	지상 1층 평면도	1 / 200
		204	기준층 평면도	1 / 200
		205	지상 18층 평면도	1 / 200
		206	지상 19층 평면도	1 / 200
		207	지상 20~26층 평면도	1 / 200
		208	지붕 평면도	1 / 200
		209	옥탑 평면도	1 / 200
		210	옥탑지붕 평면도	1 / 200
		221	(102동) 지하 2층 평면도	1 / 200
		222	지하 1층 평면도	1 / 200
		223	지상 1층 평면도	1 / 200
		224	기준층 평면도	1 / 200
		225	지상 20층 평면도	1 / 200
		226	지상 21~28층 평면도	1 / 200
		227	지상 29층 평면도	1 / 200
		228	지붕 평면도	1 / 200
		229	옥탑 평면도	1 / 200
		230	옥탑 수조 평면도	1 / 200
		231	옥탑지붕 평면도	1 / 200
		241	(103동) 지하 2층 평면도	1 / 200
		242	지하 1층 평면도	1 / 200
		243	지상 1층 평면도	1 / 200
		244	기준층 평면도	1 / 200
		245	지상 19층 평면도	1 / 200
		246	지상 20~24층 평면도	1 / 200
		247	지상 25층 평면도	1 / 200
		248	지상 26~27층 평면도	1 / 200
		249	지붕 평면도	1 / 200
		240	옥탑 평면도	1 / 200
		251	옥탑지붕 평면도	1 / 200
		261	(104동) 지하 2층 평면도	1 / 200
		262	지하 1층 평면도	1 / 200
		263	지상 1층 평면도	1 / 200
		264	기준층 평면도	1 / 200
		265	지상 12층 평면도	1 / 200
		266	지상 13~19층 평면도	1 / 200
		267	지붕 평면도	1 / 200
		268	옥탑 평면도	1 / 200
		269	옥탑지붕 평면도	1 / 200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도면목록표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01

분 류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입면도	A	301	(101동) 정면도, 우측면도	1 / 400
		302	배면도, 좌측면도	1 / 400
		303	(102동) 정면도, 우측면도	1 / 400
		304	배면도, 좌측면도	1 / 400
		305	(103동) 정면도, 우측면도	1 / 400
		306	배면도, 좌측면도	1 / 400
		307	(104동) 정면도, 우측면도	1 / 400
		308	배면도, 좌측면도	1 / 400
단면도	A	401	(101동) 주단면도	1 / 100
		402	(102동) 주단면도	1 / 100
		403	(103동) 주단면도	1 / 100
		404	(104동) 주단면도	1 / 100
		431	(101동) 지하2층, 지하1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32	지하1층(중간층), 지상1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33	지상 2층, 기준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34	지상 18층, 지상 19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35	지상 20~26층, 지붕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36	옥탑, 옥탑지붕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41	(102동) 지하2층, 지하1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42	지하1층(중간층), 지상1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43	지상 2층, 기준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44	지상 20층, 지상21~28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45	지상 29층, 지붕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46	옥탑, 옥탑수조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47	옥탑지붕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51	(103동) 지하2층, 지하1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52	지하1층(중간층), 지상1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53	지상 2층, 기준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54	지상 19층, 지상 20~24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55	지상 25층, 지상 26~27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56	지붕층, 옥탑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56	옥탑지붕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61	(104동) 지하2층, 지하1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62	지하1층(중간층), 지상1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63	지상 2층, 기준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64	지상 12층, 지상 13~19층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65	지붕층, 옥탑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466	옥탑지붕 코어확대평면도	1 / 100

분 류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471	(101동) 코어 확대 단면도-1,2	1 / 120
		472	(102동) 코어 확대 단면도-1,2	1 / 120
		473	(103동) 코어 확대 단면도-1,2	1 / 120
		474	(104동) 코어 확대 단면도-1,2	1 / 120
창호도	A	501	(기본형) 84형 단위세대 창호일람표	1 / 80
		502	(확장형) 84형 단위세대 창호일람표-1	1 / 80
		503	84형 단위세대 창호일람표-2	1 / 80
		511	아파트 공용부분 창호일람표-1	1 / 80
		512	아파트 공용부분 창호일람표-2	1 / 80
지하주차장	A	601	지하 주차장 평면도	1 / 800
		611	지하주차장 단면도	1 / 500
		621	램프 경사로 평면도 -1	1 / 200
		622	램프 경사로 평면도 -2	1 / 200
		623	램프 경사로 단면도	1 / 200
		631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확대평면도	1 / 300
		632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단면도	1 / 300
		641	(관리사무소 및 휘트니스) 평면도	1 / 200
		642	단면도	1 / 120
		643	창호일람표-1	1 / 80
		644	창호일람표-2	1 / 80

분 류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부대복리시설	A	701	(경로당) 평면도	1 / 100
		702	입면도	1 / 100
		703	단면도	1 / 100
		704	창호일람표	1 / 80
		711	(경비실) 평면도, 단면도, 창호일람표	1 / 100
		712	(경비실) 입면도	1 / 100
		721	(부문주) 배치평면도	1 / 100
		722	(부문주) 입면도	1 / 100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도면목록표-2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02

주변환경분석

SITE ANALYSIS

충주연수2지구공동주택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築士 趙 淵 秀

특기사항 Notes

승인 APPROVED BY	-
검사 CHECKED BY	-
설계 DESIGNED BY	
제도 DRAWN BY	
작성일 DATE	2024. 08.
축척 SCALE	A3: 1 / NONE

도면명 NAME OF DRAWING

위치안내도

분류번호 DRAWING NO.

-

도면번호 SHEET NO.

A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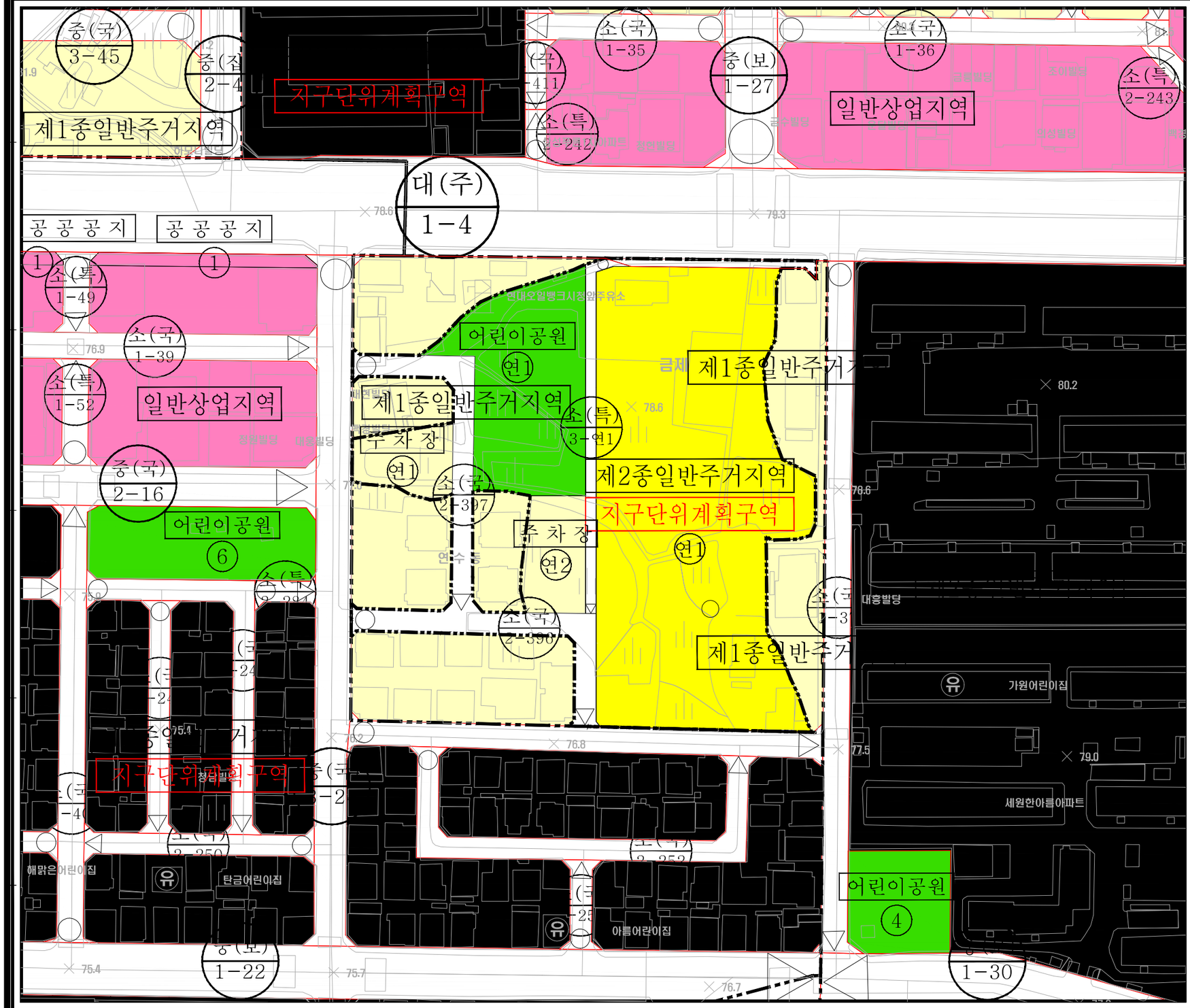

충주시 연수동 787-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어린이공원
- 공공공지
- 주차장
- 도시계획도로(대로)
- 도시계획도로(중로)
- 도시계획도로(소로)

N

SCALE = 1 : 1,000(A2)

0 10 20 50 100m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기사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06

■ 사 업 개 요

구 분		내 용			
공사개요	공 사 명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대지개요	대지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87-25번지 일원			
	지역 / 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지 면적	사업대지면적			
		12,413.0			
	도로 현황	북측 : 35M 도로 [번영대로] / 동측 : 10M 도로 [연수서1길]			
건축개요	규 모	지하 2층 / 지상 29층			
	용 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물 개요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구 분	세대수	비 고	구 분 / 비 고
		84A	243	100.0%	지하주차장 (105동)
					관리사무소 (106동) / 지하 1층에 설치함
					주민운동시설 등 (107동) / 지하 1층에 설치함
					경비실 및 MDF실 (108동) / 지상 1층에 설치함
		합 계	243 세대		경로당 (109동) / 지상 1층에 설치함
	주요 구조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및 라멘구조			
		지붕구조 : 평 스라브			
건축규모	구 분	합 계	아파트 (101~104동)	부대복리 (105~109동)	
	지하 연면적	15,002.0317		15,002.0317	
	지상 연면적	27,424.2908	27,254.8288	169.4620	
	용적률산정면적	27,424.2908	27,254.8288	169.4620	
	전체 연면적	42,426.3225	27,254.8288	15,171.4937	
	건 축 면 적	2,109.2644	1,954.1984	155.0660	
	건 폐 율	16.99%	60 % 이하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용 적 률	220.93%	235 % 이하 (221% 이하)	충주시 연수2지구 지구단위계획 (적용용적률)	
주차개요	법 정 대 수	243 대	[아파트 : 세대당 1대] ----- 충주시 주차장조례		
	계 획 주 차	388 대	[지상주차] 11 대 ----- [급속주차 1대 / 완속주차 10대]		세대 당 주차대수
			[지하주차] 377 대 ----- [지하주차장 비율 : 97.17 %]		388 대 / 243 세대 = 1.60 대
조경개요		4,345.55	[대지면적의 35.01 %]	법정면적 : 1,241.3 ㎡ (대지면적의 10%)	

■ 부대복리시설 개요

(단위 = ㎡)

구 분	법정 설치기준			계획내용		비 고
진 입 도 로	300 세대 미만 : 폭 6M 이상			기간도로에 6M 이상 접함		규정 25조
단지안의 도로	폭 7M 이상			단지내도로 7M (1.5M 보도포함) 이상		규정 26조
주 차 장	공동주택 : 세대 당 1대 이상	243 대		지상주차: 11 대	계획주차 : 388 대 (세대당 1.60대)	규정 27조
				지하주차: 377 대		
	법정주차 합계	243 대		주차합계 : 388 대		
자전거주차장	법정주차대수의 20% 이상			52 대 설치 ----- [법정주차대수의 21.40 %]		
관리 사무소	10+(243-50)x0.05 = 19.65 ㎡			134.8560 ㎡ 설치		규정 28조
조 경 시 설	대지면적의 10%이상 설치			4,345.55 ㎡ 설치	[대지면적의 35.01 %]	충주시 건축조례
안내표지판 등	300세대이상 단지유도표지판, 입구표지판, 종합안내판 등 설치			단지 내 설치함		규정 31조
	2개동 이상인경우 외벽 동번호 표시			외벽에 동번호 표시함		
	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 게시판 설치			단지 내 설치함		
통신시설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 각세대-경비실간의 구내전화 및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설치			인터폰설치		규정 32조
보 안 등	어린이놀이터및 도로 보안등 설치(도로에 보안등 50M 이내마다 설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는 50m이내 설치 (자동 점멸장치 및 시간조절가능)		규정 33조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 공급 가능지역은 세대별로 도시가스 설치			세대별 도시가스 설치		규정 34조
비상급수시설	243세대 X 0.5TON = 121.5 TON 이상 설치			지하저수조122.4TON이상설치		규정 35조
난 방 시 설	개별난방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개별난방 공급방식 계획		규정 37조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난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마련			실외기 공간을 활용하여 난방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함		
폐기물보관	생활폐기물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차량출입이 가능한 곳			차량출입이 가능한 곳에 용기설치		규정 38조
영상정보처리	보안 및 방범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설치함		규정 39조
공동수신설비	세대당 공동시청 안테나와연결된 T.V단자2개소 이상 설치			2개소 이상 설치		규정 42조
급배수시설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			2개소 이상 설치		규정 43조
배기설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 설치			설치함		규정 44조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1,000 ㎡를 넘는 경우 : 하역동에 필요한 공터설치			해당없음		규정50조
주민공동시설	100세대 ~1,000세대 미만 : 243세대 X 2.5 = 607.5 ㎡ 이상					규정55조의2
	경로당	150 세대 이상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	102.4260		
	어린이놀이터	150 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	414.0000		
	어린이집	300 세대 이상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해당없음		
	주민운동시설	500 세대 이상	시설물은 안전사고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	해당없음		
	작은도서관	500 세대 이상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기준에 적합	해당없음	[33㎡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500 세대 이상	아동복지법 제44조의제5항 기준에 적합	해당없음	[전용면적 66㎡ 이상]	
경비실				52.6400	주출입구에 1개소 설치함	

■ 아파트 공급면적표

구 분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 약 면 적	비 고
형 별	세대수	전 용 면 적	코아 공용면적			주택 공급면적	지하 동출입구 및 제연휀룸 등	지하주차장 및 휀룸, 계단실 등	기계실 및 전기실 등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집회소	휘트니스	경비실, MDF실 근로자휴게실 등	경로당			소 계		
			벽체공용	계단공용	소 계													
84A	243	84.9093	8.6949	18.5555	27.2504	112.1597 (33.9PY)	0.3244	57.3081	2.2513	0.5549	1.3570	0.2166	0.4215			62.4338	174.5935	
합 계	243	20,632.9599	2,112.8607	4,509.0082	6,621.8689	27,254.8288	78.8424	13,925.8888	547.0812	134.8560	329.7593	52.6400	102.4260			15,171.4937	42,426.3225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사업개요-1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11

■ 아파트동 층별 바닥면적표

구 분		공 동 주 택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소 계
		APT:58세대	APT:73세대	APT:66세대	APT:46세대									APT:243세대
지상	1 층 공동주택	40.2994	40.2994	40.2994	40.2994									161.1976
	1 층 합 계	40.2994	40.2994	40.2994	40.2994									161.1976
	2 층	327.2980	327.2980	327.2980	327.2980									1,309.1920
	3 층	327.2980	327.2980	327.2980	327.2980									1,309.1920
	4 층	327.2980	327.2980	327.2980	327.2980									1,309.1920
	5 층	327.2980	327.2980	327.2980	327.2980									1,309.1920
	6 층	327.2980	327.2980	327.2980	327.2980									1,309.1920
	7 층	327.2980	327.2980	327.2980	327.2980									1,309.1920
	8 층	327.2980	327.2980	327.2980	327.2980									1,309.1920
	9 층	327.2980	327.2980	327.2980	327.2980									1,309.1920
	10 층	327.2980	327.2980	327.2980	327.2980									1,309.1920
	11 층	327.2980	327.2980	327.2980	327.2980									1,309.1920
	12 층	327.2980	327.2980	327.2980	233.0675									1,214.9615
	13 층	327.2980	327.2980	327.2980	233.0675									1,214.9615
	14 층	327.2980	327.2980	327.2980	233.0675									1,214.9615
	15 층	327.2980	327.2980	327.2980	233.0675									1,214.9615
	16 층	327.2980	327.2980	327.2980	233.0675									1,214.9615
	17 층	327.2980	327.2980	327.2980	233.0675									1,214.9615
	18 층	231.8525	327.2980	327.2980	233.0675									1,119.5160
	19 층	131.3195	327.2980	231.8525	233.0675									923.5375
	20 층	124.6379	231.8525	231.8525										588.3429
	21 층	124.6379	231.8525	231.8525										588.3429
	22 층	124.6379	231.8525	231.8525										588.3429
	23 층	124.6379	231.8525	231.8525										588.3429
	24 층	124.6379	231.8525	231.8525										588.3429
	25 층	124.6379	231.8525	137.6221										494.1125
	26 층	124.6379	231.8525	137.6221										494.1125
	27 층		231.8525	137.6221										369.4746
	28 층		231.8525											231.8525
	29 층		137.6221											137.6221
	소 계	6,512.7047	8,155.9580	7,408.3467	5,177.8194									27,254.8288
면 적 계		6,512.7047	8,155.9580	7,408.3467	5,177.8194									27,254.8288
용적률산정면적		6,512.7047	8,155.9580	7,408.3467	5,177.8194									27,254.8288
건축면적		488.5496	488.5496	488.5496	488.5496									1,954.1984

■ 부대 및 복리시설 층별 바닥면적표

구 분		부 대 및 복 리 시 설 동									합 계	근린생활시설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소 계				
		지하주차장 등 (램프,계단실 포함)	펌프실,전기실,발전기실/우수저류조 등		소 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집회소 등	휘트니스 등	경비실, MDF실 근로자휴게실 등	경로당					
지하	지하 2층	6,940.4188	470.2588		7,410.6776					0.0000	7,410.6776			
	지하 1층	7,049.9164	76.8224		7,126.7388	134.8560	329.7593			464.6153	7,591.3541			
	소 계	13,990.3352	547.0812		14,537.4164	134.8560	329.7593			464.6153	15,002.0317			
지상	지상 1층	14.3960			14.3960			52.6400	102.4260	155.0660	169.4620			
	소 계	14.3960	0.0000					52.6400	102.4260	155.0660	155.0660			
면 적 계		14,004.7312	547.0812		14,551.8124	134.8560	329.7593	52.6400	102.4260	619.6813	15,171.4937			
건축면적								52.6400	102.4260	155.0660	155.0660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사업개요-2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12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建築士 趙 淵 秀

특기사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1,0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단 지 배 치 도
분류번호 DRAWING NO.	-
도면번호 SHEET NO.	A - 013

■ 범 례

기 호	부 호	명 칭	개 소	비 고
	Ⓐ	우편물 수취함	4개소	각동 주출입구에 설치
	Ⓑ	자전거 보관소	4개소	각동 필로티에 설치 (52대)
	Ⓒ	생활폐기물 보관소	2개소	
	Ⓓ	시설물 표지판	1개소	경로당에 설치
	Ⓔ	단지 입구 표지판	1개소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
	Ⓕ	단지 종합안내판	1개소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
	Ⓖ	미술장식품	1개소	
	Ⓗ	주차장 표지판	1개소	적정위치에 설치
	Ⓘ	DA	8개소	
	Ⓙ	탑라이트	2개소	
	Ⓚ	부문주	2개소	

시설물 및 지반층 배치도

축 척 A1:1/ 500, A3:1/ 1,000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1,0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시설물 및 지반층 배치도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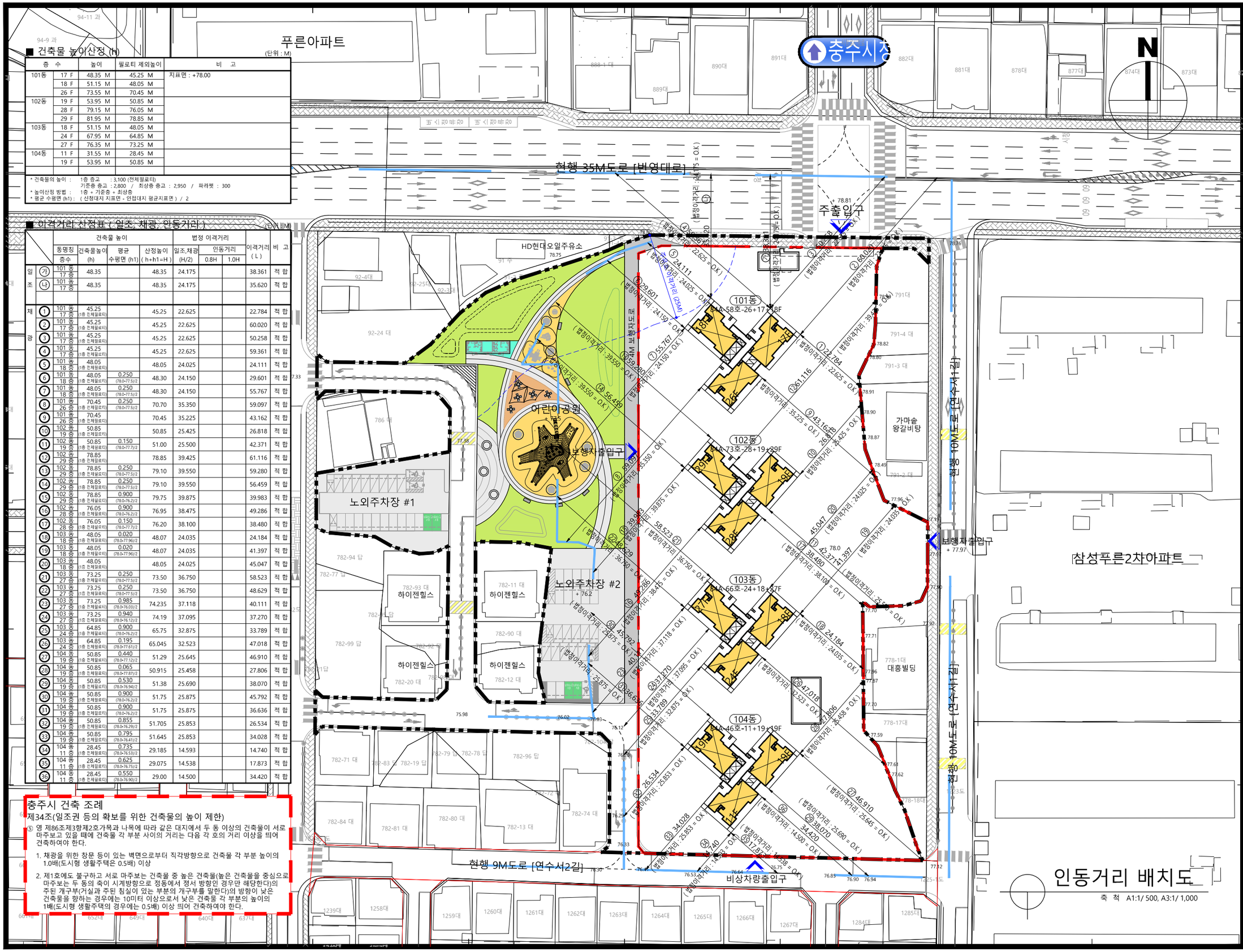

■ 건축물 높이산정 (h)

층 수		높이	필로티 제외높이	비 고
101동	17 F	48.35 M	45.25 M	지표면 : +78.00
	18 F	51.15 M	48.05 M	
	26 F	73.55 M	70.45 M	
102동	19 F	53.95 M	50.85 M	
	28 F	79.15 M	76.05 M	
	29 F	81.95 M	78.85 M	
103동	18 F	51.15 M	48.05 M	
	24 F	67.95 M	64.85 M	
	27 F	76.35 M	73.25 M	
104동	11 F	31.55 M	28.45 M	
	19 F	53.95 M	50.85 M	

* 건축물의 높이 : 1층 층고 : 3,100 (전체필로티)
기준층 층고 : 2,800 / 최상층 층고 : 2,950 / 파라펫 : 300
* 높이산정 방법 : 1층 + 기준층 + 최상층
* 평균 수평면 (h1) : (신청대지 지표면 - 인접대지 평균지표면) / 2

■ 이격거리 산정표 (일조, 채광, 인동거리)

(단위 : M)

		건축물 높이 동명칭 층수	건축물높이 (h)	평균 수평면 (h1)	산정높이 (h+h1=H)	법정 이격거리 일조,채광 (H/2)	인동거리 0.8H	인동거리 1.0H	이격거리 (L)	비 고
일조	㉮	101 동 17 층	48.35		48.35	24.175			38.361	적 합
	㉯	101 동 17 층	48.35		48.35	24.175			35.620	적 합
채광	①	101 동 17 층	45.25 (1층 전체필로티)		45.25	22.625			22.784	적 합
	②	101 동 17 층	45.25 (1층 전체필로티)		45.25	22.625			60.020	적 합
	③	101 동 17 층	45.25 (1층 전체필로티)		45.25	22.625			50.258	적 합
	④	101 동 17 층	45.25 (1층 전체필로티)		45.25	22.625			59.361	적 합
	⑤	101 동 18 층	48.05 (1층 전체필로티)		48.05	24.025			24.111	적 합
	⑥	101 동 18 층	48.05 (1층 전체필로티)	0.250 (78.0-77.5)/2	48.30	24.150			29.601	적 합
	⑦	101 동 18 층	48.05 (1층 전체필로티)	0.250 (78.0-77.5)/2	48.30	24.150			55.767	적 합
	⑧	101 동 26 층	70.45 (1층 전체필로티)	0.250 (78.0-77.5)/2	70.70	35.350			59.097	적 합
	⑨	101 동 26 층	70.45 (1층 전체필로티)		70.45	35.225			43.162	적 합
	⑩	102 동 19 층	50.85 (1층 전체필로티)		50.85	25.425			26.818	적 합
	⑪	102 동 19 층	50.85 (1층 전체필로티)	0.150 (78.0-77.7)/2	51.00	25.500			42.371	적 합
	⑫	102 동 29 층	78.85 (1층 전체필로티)		78.85	39.425			61.116	적 합
	⑬	102 동 29 층	78.85 (1층 전체필로티)	0.250 (78.0-77.5)/2	79.10	39.550			59.280	적 합
	⑭	102 동 29 층	78.85 (1층 전체필로티)	0.250 (78.0-77.5)/2	79.10	39.550			56.459	적 합
	⑮	102 동 29 층	78.85 (1층 전체필로티)	0.900 (78.0-76.2)/2	79.75	39.875			39.983	적 합
	⑯	102 동 28 층	76.05 (1층 전체필로티)	0.900 (78.0-76.2)/2	76.95	38.475			49.286	적 합
	⑰	102 동 28 층	76.05 (1층 전체필로티)	0.150 (78.0-77.7)/2	76.20	38.100			38.480	적 합
	⑱	103 동 18 층	48.05 (1층 전체필로티)	0.020 (78.0-77.96)/2	48.07	24.035			24.184	적 합
	⑲	103 동 18 층	48.05 (1층 전체필로티)	0.020 (78.0-77.96)/2	48.07	24.035			41.397	적 합
	⑳	103 동 18 층	48.05 (1층 전체필로티)		48.05	24.025			45.047	적 합
	㉑	103 동 27 층	73.25 (1층 전체필로티)	0.250 (78.0-77.5)/2	73.50	36.750			58.523	적 합
	㉒	103 동 27 층	73.25 (1층 전체필로티)	0.250 (78.0-77.5)/2	73.50	36.750			48.629	적 합
	㉓	103 동 27 층	73.25 (1층 전체필로티)	0.985 (78.0-76.03)/2	74.235	37.118			40.111	적 합
	㉔	103 동 27 층	73.25 (1층 전체필로티)	0.940 (78.0-76.12)/2	74.19	37.095			37.270	적 합
	㉕	103 동 24 층	64.85 (1층 전체필로티)	0.900 (78.0-76.2)/2	65.75	32.875			33.789	적 합
	㉖	103 동 24 층	64.85 (1층 전체필로티)	0.195 (78.0-77.61)/2	65.045	32.523			47.018	적 합
	㉗	104 동 19 층	50.85 (1층 전체필로티)	0.440 (78.0-77.12)/2	51.29	25.645			46.910	적 합
	㉘	104 동 19 층	50.85 (1층 전체필로티)	0.065 (78.0-77.87)/2	50.915	25.458			27.806	적 합
	㉙	104 동 19 층	50.85 (1층 전체필로티)	0.530 (78.0-76.94)/2	51.38	25.690			38.070	적 합
	㉚	104 동 19 층	50.85 (1층 전체필로티)	0.900 (78.0-76.2)/2	51.75	25.875			45.792	적 합
	㉛	104 동 19 층	50.85 (1층 전체필로티)	0.900 (78.0-76.2)/2	51.75	25.875			36.636	적 합
	㉜	104 동 19 층	50.85 (1층 전체필로티)	0.855 (78.0-76.29)/2	51.705	25.853			26.534	적 합
	㉝	104 동 19 층	50.85 (1층 전체필로티)	0.795 (78.0-76.41)/2	51.645	25.853			34.028	적 합
	㉞	104 동 11 층	28.45 (1층 전체필로티)	0.735 (78.0-76.53)/2	29.185	14.593			14.740	적 합
	㉟	104 동 11 층	28.45 (1층 전체필로티)	0.625 (78.0-76.75)/2	29.075	14.538			17.873	적 합
	㊱	104 동 11 층	28.45 (1층 전체필로티)	0.550 (78.0-76.90)/2	29.00	14.500			34.420	적 합

충주시 건축 조례

제34조(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1,0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인동거리 배치도
분류번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15

인동거리 배치도

축 척 A1:1/ 500, A3:1/ 1,000

1 대 지 종 단 면 도

축 척 A1:1/ 400, A3:1/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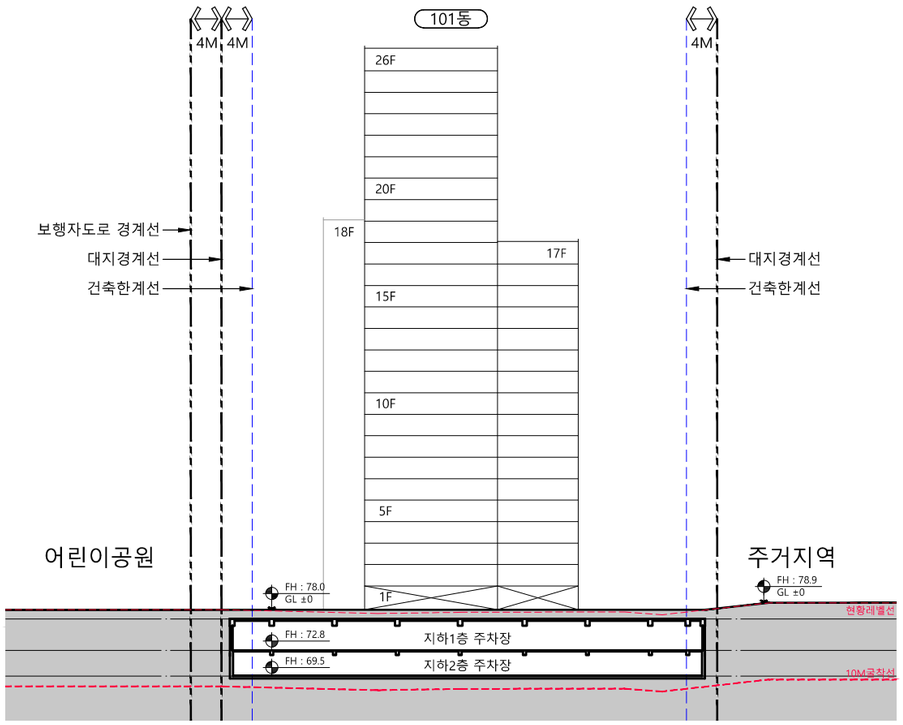

2 대 지 횡 단 면 도

축 척 A1:1/ 400, A3:1/ 800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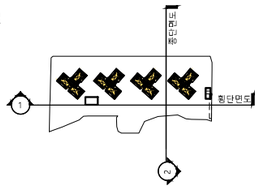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建築士 趙 淵 秀

특기사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8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대지 종,횡단면도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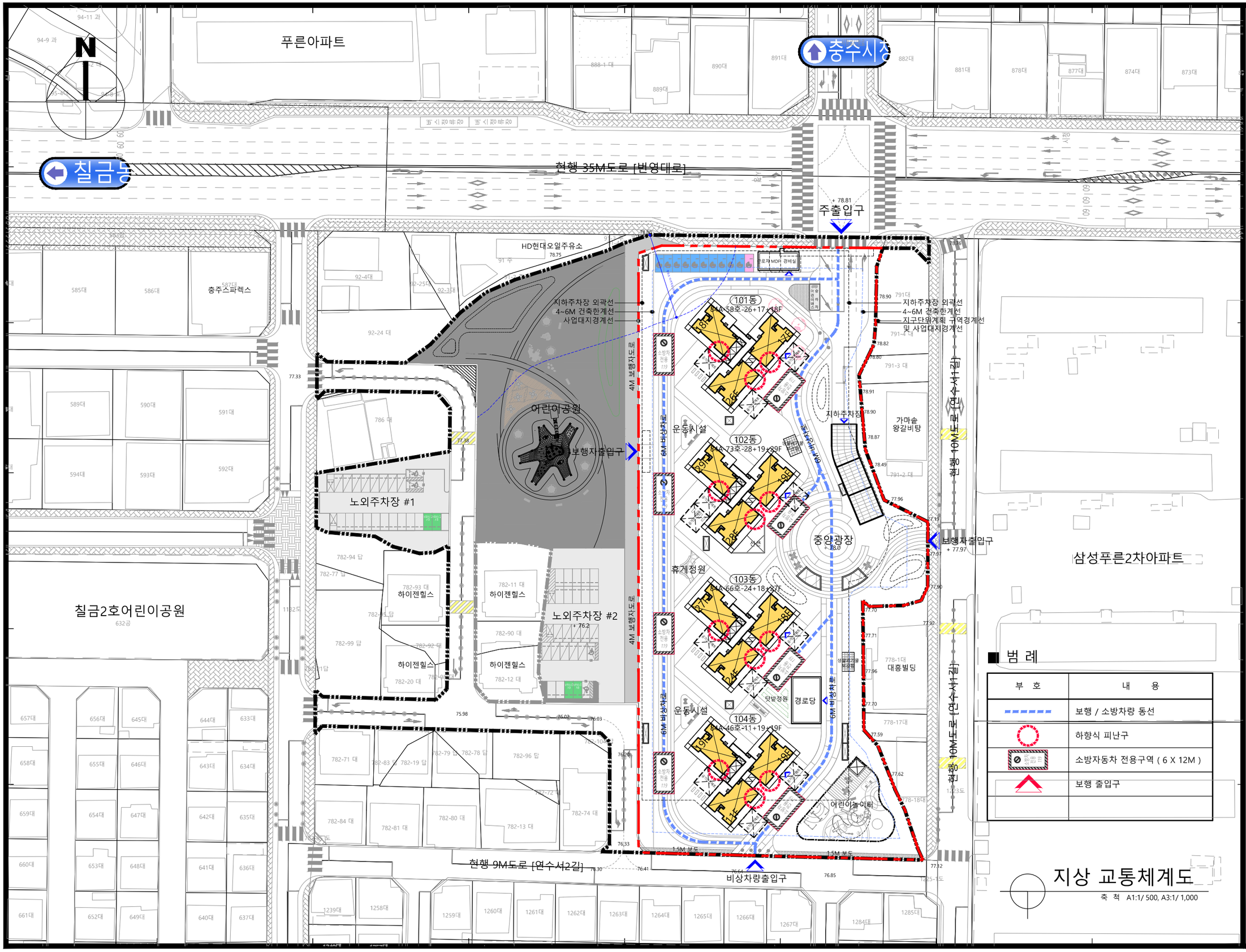

범 례

부 호	내 용
	보행 / 소방차량 동선
	하향식 피난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6 X 12M)
	보행 출입구

지상 교통체계도

축 척 A1:1/ 500, A3:1/ 1,000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1,0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지상 교통체계도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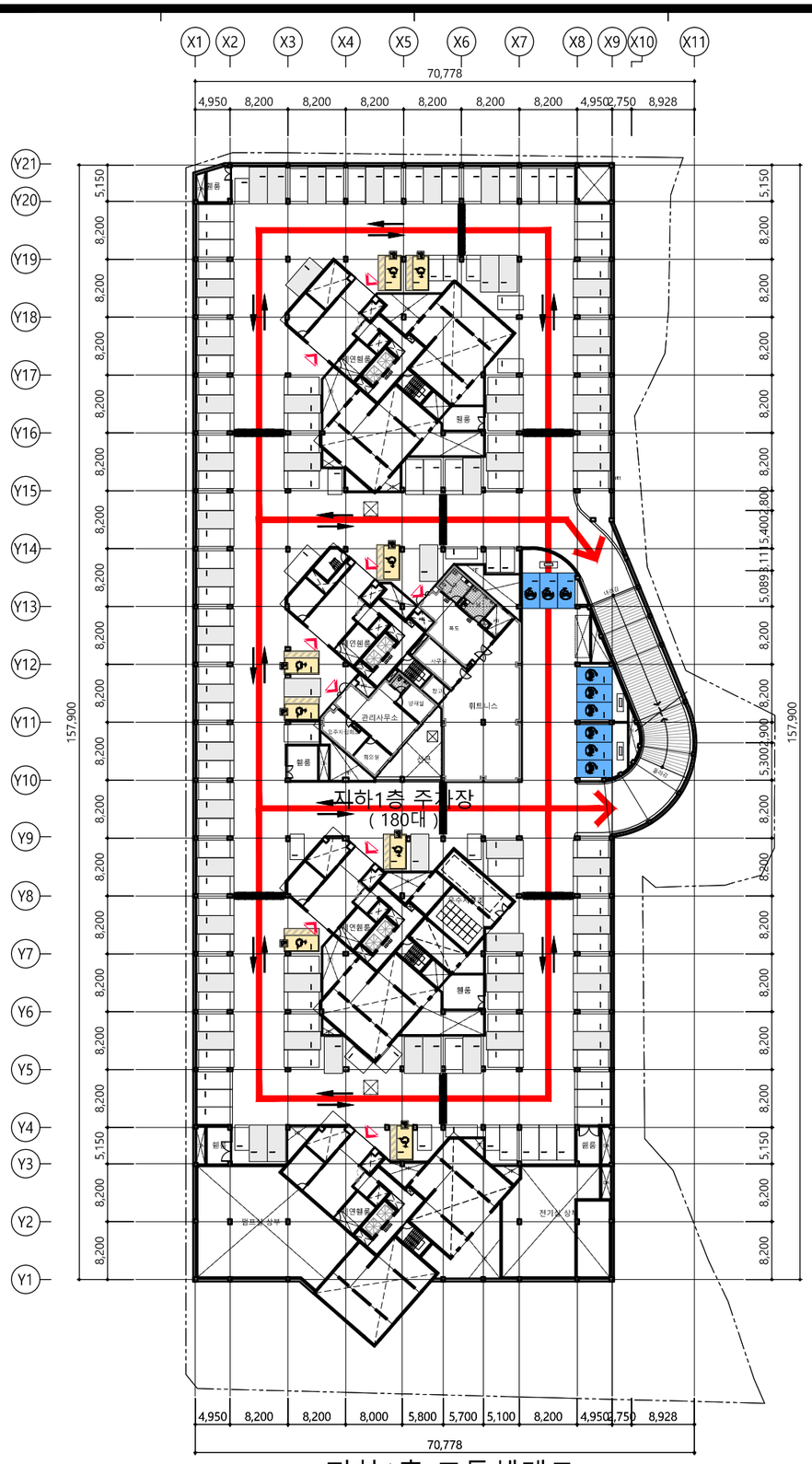

1 A 지하1층 교통체계도

SCALE : 1 /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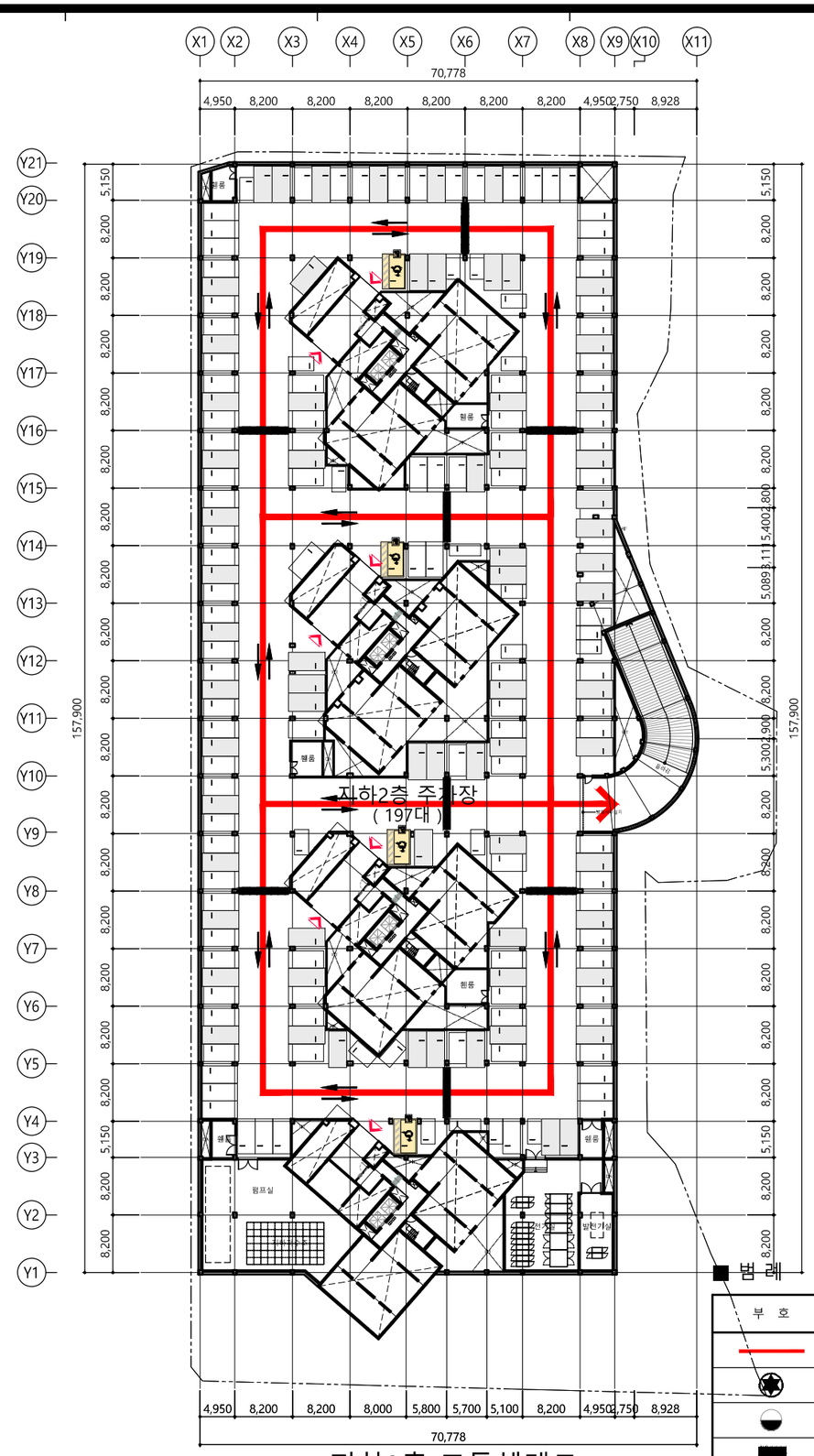

2 A 지하2층 교통체계도

SCALE : 1 / 800

■ 주차계획

지상 주차장	11 대	
	2.84 %	
지하1층 주차장	180 대	
	46.39 %	
지하2층 주차장	197 대	
	50.77 %	
주차대수 합계	388 대	
	100 %	

■ 범례

일반형주차 (전기차포함)	199 대	
	51.29 %	
경형주차	38 대	
	9.79 %	
확장형주차 (전기차포함)	119 대	
	30.67 %	
장애인주차	12 대	
	3.09 %	
전기차주차	19 대	
	4.90 %	
전기차주차 (급속주차)	1 대	
	0.26 %	

■ 범례

부 호	내 용
	차량 동선
	차량경고등
	반 사 경
	과속방지턱 (험프형)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8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지하 교통체계도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22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1

편의시설 구분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비 고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엔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x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울기 등 -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경계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4. 재질과 마감 -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행장애물 -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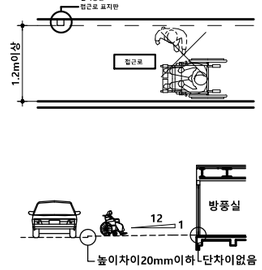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1. 설치장소 -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주차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유도 및 표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2)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2)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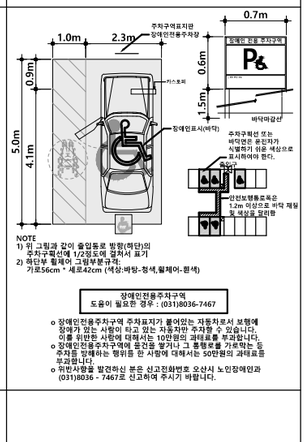
높이차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1. 턱낮추기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설치 -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문의 형태 -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기타 설비 -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문짝마감기준)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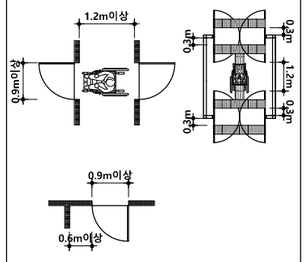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1. 유효폭 -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바닥 -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손잡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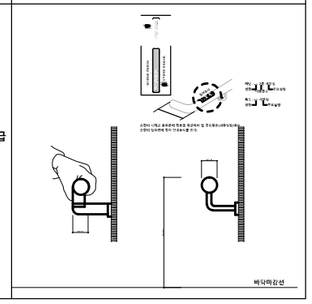

편의시설 구분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비 고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4. 보행장애물 -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성 확보 -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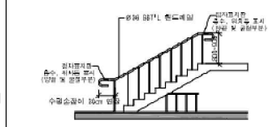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1. 계단의 형태 -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유효폭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디딤판과 챌면 -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재질과 마감 -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설비 -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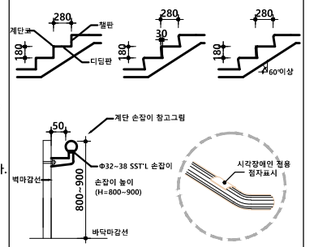
장애인용 승강기	1.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크기 -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이용자 조작설비 -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설비 -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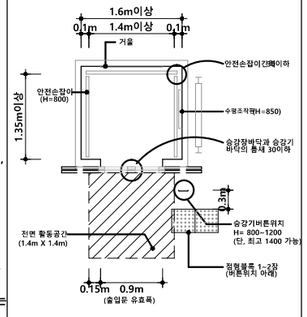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1. 유효폭 및 속도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디딤판 -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3. 손잡이 -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도-1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31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2

편의시설 구분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비 고
휠체어리프트	1. 일반사항 -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경사로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2. 기울기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1)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2)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3)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3. 손잡이 -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재질과 마감 -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5. 기타 시설 -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1. 일반사항 - 설치장소 (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재질과 마감 (1)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2)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기타 설비 (1)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 활동공간 (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 구조 (1)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2)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손잡이 (1)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3)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5)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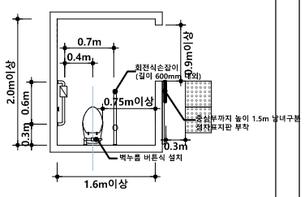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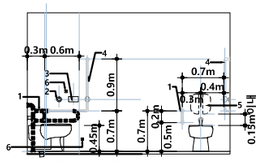 1 . 회전식 보조손잡이(Φ32~38 SST 봉강설치) 2 . 벽누름 버튼식 설치 3 . 휴지걸이설치 4 . 다용도손잡이 L형(Φ32~38 SST 봉강설치) 5 . 등받이 설치 6 . 비상용 벨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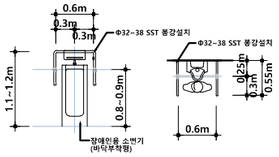 <신축건물>

편의시설 구분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비 고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2. 대변기 - 기타 설비 (1)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변기 - 구조 (1)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 손잡이 (1)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면대 - 구조 (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손잡이 및 기타 설비 (1)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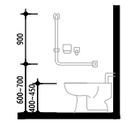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1. 설치장소 -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바닥 -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손잡이 -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5. 기타 설비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1. 설치장소 -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구조 3. 바닥 -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손잡이 -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5. 기타 설비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점자블록	1. 규격 및 색상 -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치방법 -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 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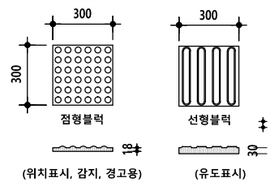 (위치표시, 감지, 경고용) (유도표시) NOTE) 주출입구/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계단/ 단차의 전면 300 위치에 설치 <점형블럭 규정 준수 사항> - 내부: 자기질 또는 도기질 - 외부: 고강도 콘크리트 블럭 - 리벳제품, 스텐제품, 고무바닥부착형제품 부적정 - 색상: 황색(상황에 따라 바닥재와 구분된 색상 사용) - 매입시공: 점형블럭을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2. 음성안내장치 -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3. 기타 유도신호장치 -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도-2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32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3

편의시설 구분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비 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1. 일반사항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1. 설치장소	-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구조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바닥	-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4. 기타 설비	-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가목(2)(가)・(3)(나), 나목(1)부터 (3)까지・(4)(가), 라목 및 제1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1. 설치장소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람석의 구조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 거리일 경우에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 줄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 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할 수 있다. -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3. 열람석의 구조	-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1. 활동공간	-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조	-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1. 활동공간	-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조	-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1. 설치장소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설치장소	-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3. 이용자 조작설비	-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기타 설비	-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1. 설치장소	-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편의시설 / 분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 고
	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적 용 여 부	●	●	●	●	●	●	×	×	×	×	×	×		●	×					
관리사무소,주민공동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적 용 여 부	●		●	●	●	●	●	●	●											
경로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적 용 여 부	●	●	●	●	●	●	●	●	×	×	×				×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도-3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33

1 지하1층 비주거 화장실 확대 평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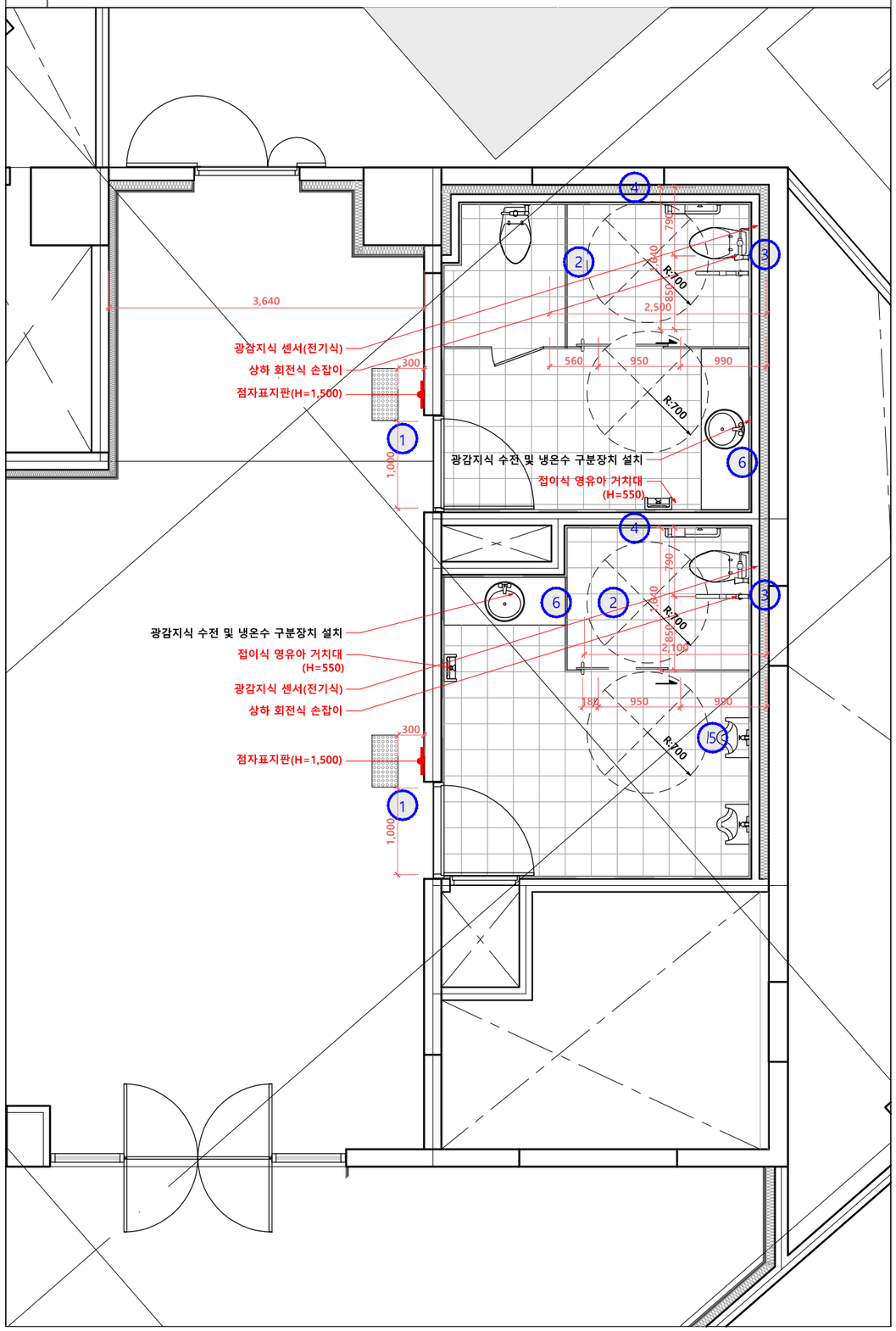

2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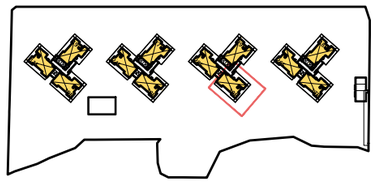

1 화장실 점자표지판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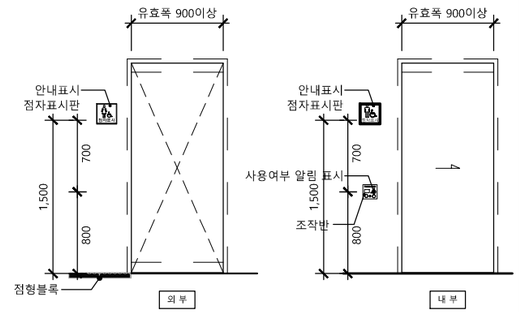

2 화장실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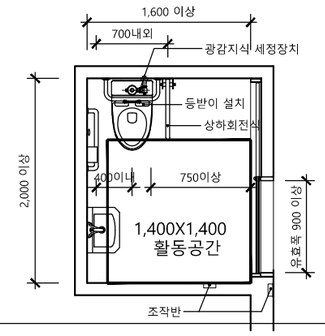

3 장애인 화장실 전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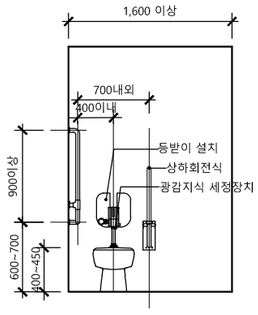

4 장애인 화장실 전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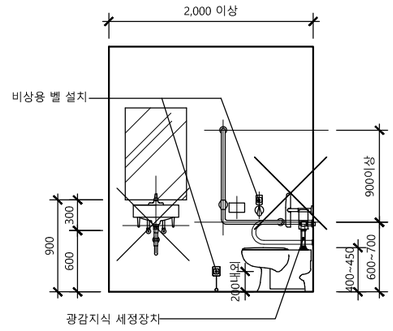

5 장애인 소변기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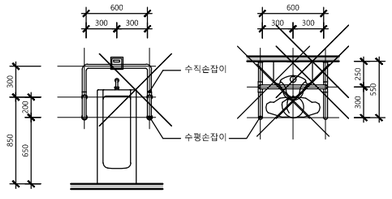

6 세면대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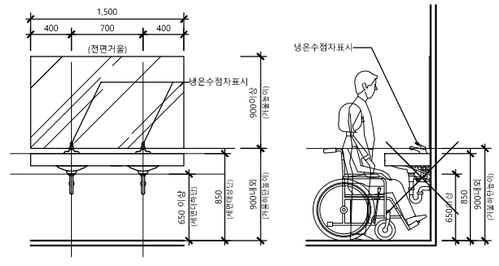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1 / 6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주민공동시설) 비주거 화장실 전개도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34

1 지상1층 비주거 화장실 확대 평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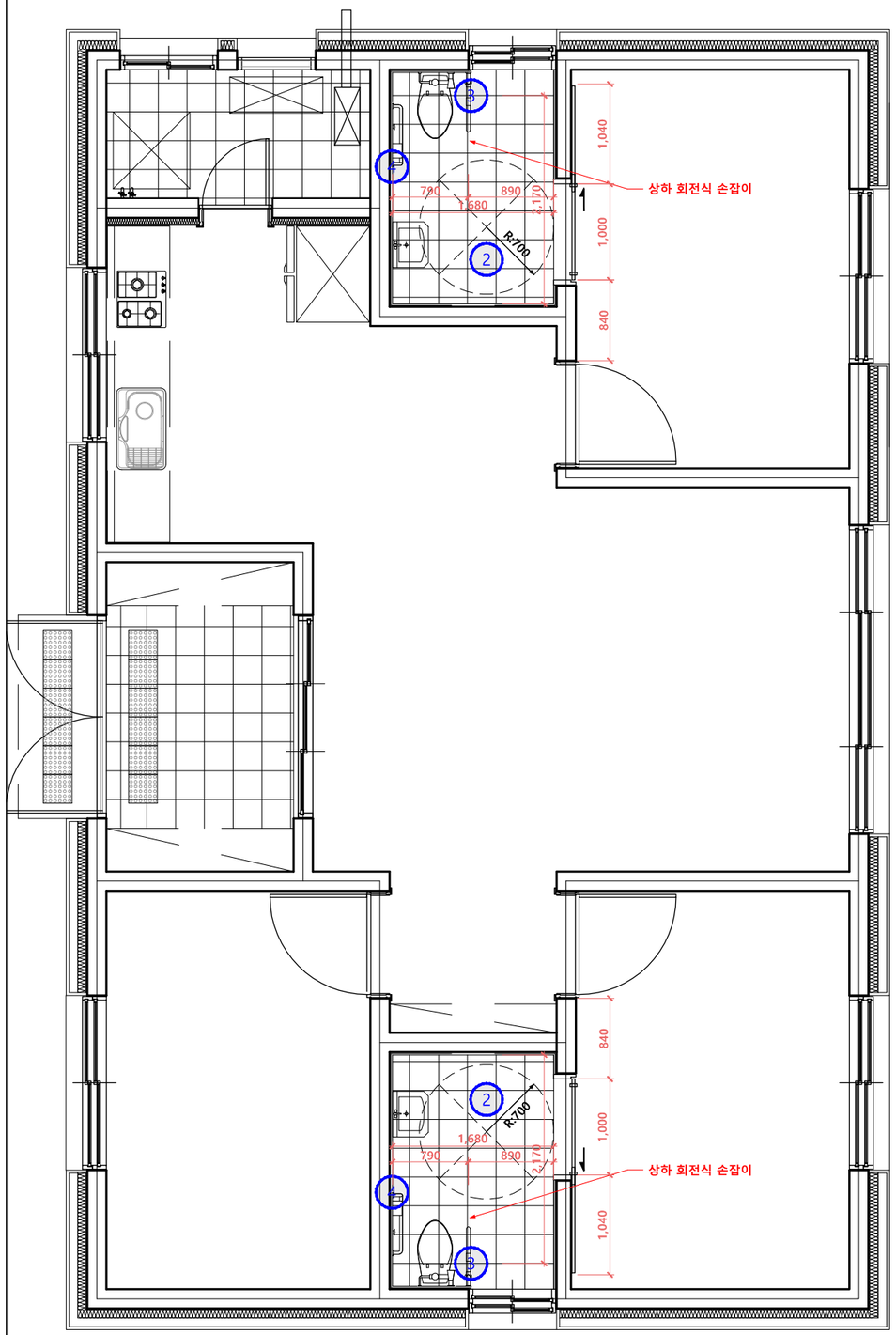

2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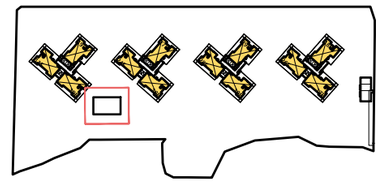

1 화장실 점자표지판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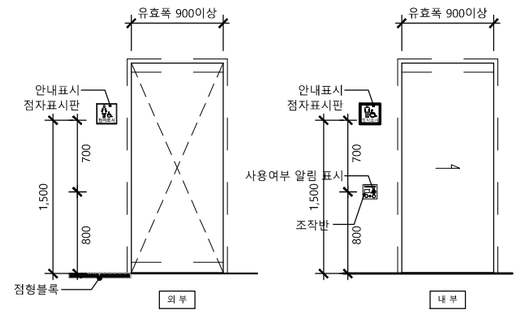

2 화장실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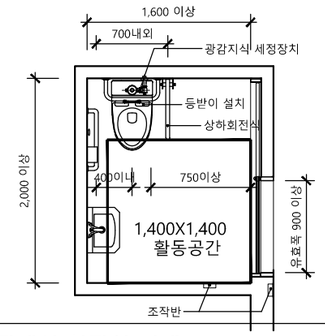

3 장애인 화장실 전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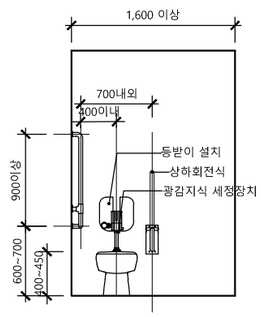

4 장애인 화장실 전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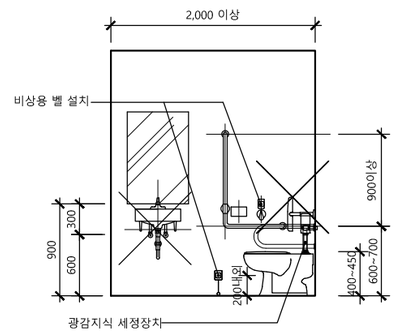

5 장애인 소변기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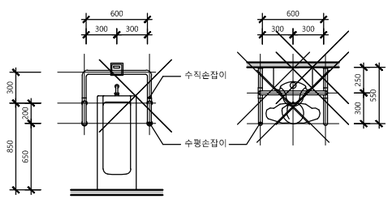

6 세면대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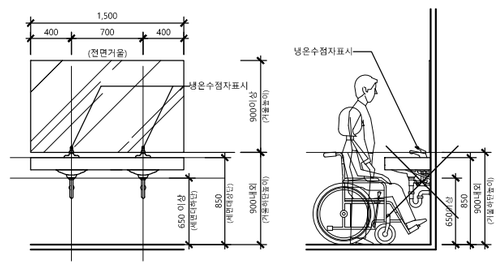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1 / 6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경로당) 비주거 화장실 전개도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35

■ 실내재료마감표 (공동주택)

구분	실명	바닥		걸레받이		벽		천장		비고
		바탕	마감	바탕	마감	바탕	마감	바탕	마감	
지하층	PIT(지하2층)	배수판/무근콘크리트	-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PIT(지하1층)	콘크리트	-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동출입구 및 복도 (최하층)	배수판/무근콘크리트/ 바탕몰탈	지정 타일	-	-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수성페인트	경량철골천장틀	지정 천장재	
	동출입구 및 복도 (지하중층)	바탕몰탈	지정 타일	-	-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수성페인트	경량철골천장틀	지정 천장재	
	ELEV. 홀(최하층)	배수판/무근콘크리트/ 바탕몰탈	지정 타일	-	-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지정 타일	경량철골천장틀	지정 천장재	
	ELEV. 홀(지하중층)	바탕몰탈	지정 타일	-	-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지정 타일	경량철골천장틀	지정 천장재	
	계단실(최하층)	배수판/무근콘크리트/ 바탕몰탈	지정 타일	콘크리트	걸레받이용 페인트	콘크리트	다채무늬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계단실(지하중층)	바탕몰탈	지정 타일	콘크리트	걸레받이용 페인트	콘크리트	다채무늬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제연휀룸	콘크리트 쇠흙손 마감 배수판/ 무근콘크리트(최하층)	에폭시페인트	-	-	콘크리트 OR 치장블럭	벽체배수판 OR 블럭쌓기 /수성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1층 및 기준층	현관	바탕몰탈	지정 타일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지정 걸레받이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지정 벽지	목재천장틀 OR 경량철골 천장틀/석고보드	지정 천장지	
	거실	판넬히팅	지정 마루	콘크리트 OR 석고보드	지정 걸레받이	콘크리트 OR 석고보드	지정 벽지	목재천장틀 OR 경량철골 천장틀/석고보드	지정 천장지	
	주방	판넬히팅	지정 마루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지정 걸레받이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지정 벽지 /지정 타일(싱크면)	목재천장틀 OR 경량철골 천장틀/석고보드	지정 천장지	
	침실	판넬히팅	지정 마루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지정 걸레받이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지정 벽지	목재천장틀 OR 경량철골 천장틀/석고보드	지정 천장지	
	드레스룸	판넬히팅	지정 마루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지정 걸레받이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지정 벽지	목재천장틀 OR 경량철골 천장틀/석고보드	지정 천장지	
	가족욕실/부부욕실	액체방수+바탕몰탈	지정 타일	콘크리트OR 시멘트몰탈	-	액체방수+바탕몰탈	지정 타일	-	지정 천장재	- 주동출입구 실외노출시 천장마감재 : 지정 천장재 - 주동출입구 외부마감 : 지정 석재
	발코니 확장부 거실/주방부	판넬히팅	지정 마루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지정 걸레받이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지정 벽지	목재천장틀 OR 경량철골 천장틀/석고보드	지정 천장지	
	발코니 확장부 침실부	판넬히팅	지정 마루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지정 걸레받이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지정 벽지	목재천장틀 OR 경량철골 천장틀/석고보드	지정 천장지	
	발코니 비확장부 발코니	액체방수+바탕몰탈	방수도장 OR 에폭시도장	-	-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수성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발코니 비확장부 실외기실	액체방수+바탕몰탈	지정 타일	-	-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수성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발코니 비확장부 하향식피난구	액체방수+바탕몰탈	방수도장 OR 에폭시도장	-	-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수성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주동 출입구	바탕몰탈	지정 석재	-	-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지정 타일	경량철골천장틀 /석고보드	지정 페인트	
	피 로 티	지정바탕	지정마감	-	-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지정마감	경량철골천장틀	지정 천장재	
	계단실 1층	바탕몰탈	지정 타일	콘크리트	걸레받이용페인트	콘크리트	다채무늬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계단실 기준층	바탕몰탈	지정 타일	콘크리트	걸레받이용페인트	콘크리트	다채무늬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계단실 최상층~옥탑층	바탕몰탈	지정 타일	콘크리트	걸레받이용페인트	콘크리트	다채무늬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ELEV홀 1층	바탕몰탈	지정 타일	-	-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지정 타일	경량철골천장틀 /석고보드	수성페인트	
	ELEV홀 기준층	바탕몰탈	지정 타일	콘크리트 OR 바탕몰탈	걸레받이용페인트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수성페인트	경량철골천장틀 /석고보드	수성페인트	
	ELEV홀 승강기 기계실	바탕몰탈	에폭시페인트	-	-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벽 및 천장마감(필요시) 흡음재 설치
외부	외 벽	-	-	-	-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	-	기단부 : 지정 석재
	평지붕	지정방수	무근콘크리트	-	-	-	-	-	-	
	옥탑지붕	지정방수	무근콘크리트	-	-	-	-	-	-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1. 인테리어 마감사항은 건본주택 마감기준을 우선함.
2. 재료마감표와 도면이 상이한 경우 재료마감표를 우선함.
3. 화장실, 발코니, 지하주차장 등 구배를 요하는 바닥마감은 구배에 따라 두께가 상이함.
4. 화장실, 샤워실의 바닥마감재는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설치 또는 미끄럼방지 마감 처리할 것
5. 공용홀과 진입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설치 또는 미끄럼방지 마감 처리할 것
6. 욕실난방의 경우 사워부스 및 욕조하부는 판넬히팅 제외.
7. ELEV홀 천장 마감은 세대 스프링 쿨러 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천장 마감은 불연재료 적용할 것)
8. 고정형 가구 및 거울(현관, 주방, 욕실, 드레스룸 등)이 설치되는 곳의 바닥, 벽 , 천장에는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아니함.
9. 각종 인증과 관련된 자재를 확인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것.
10. 액체방수 높이
    - 벽 : H=1,200
    - 욕조,샤워부스 : H=1,800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실내 재료마감표-1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41

■ 실내재료마감표 (지하주차장)

구분		실명	바닥		걸레받이		벽		천장		비고
			바탕	마감	바탕	마감	바탕	마감	바탕	마감	
주차장	지하층	주차장	배수판/ 무근콘크리트(최하층) 콘크리트	에폭시페인트	-	-	콘크리트 OR 벽체배수판	수성페인트	콘크리트	지정뿜칠	
		휀 룸	배수판/ 무근콘크리트(최하층) 콘크리트	에폭시페인트	-	-	콘크리트 OR 치장블럭	수성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램 프	무근콘크리트	조면처리	-	-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계단실	배수판/ 무근콘크리트(최하층) 바탕몰탈	지정 타일	콘크리트	걸레받이용페인트	콘크리트	다채무늬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ROOF	지정 방수+무근콘크리트	-							
펌프·전기실	지하층	펌프실	배수판/ 무근콘크리트(최하층) 무근콘크리트	에폭시페인트	-	-	콘크리트 OR 치장블럭	수성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전기실	배수판/ 무근콘크리트(최하층) 무근콘크리트	에폭시페인트	-	-	콘크리트 OR 치장블럭	수성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지하 저수조	배수판/ 무근콘크리트(최하층) 무근콘크리트	에폭시페인트	-	-	콘크리트 OR 치장블럭	-	콘크리트	-	
		발전기실	배수판/ 무근콘크리트(최하층) 무근콘크리트	에폭시페인트	-	-	콘크리트 OR 치장블럭	수성페인트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벽 및 천장마감(필요시) 흡음재 설치
옥외 ELEV	지하층	썬큰	지정 방수 + 바탕몰탈	지정 타일 OR 지정 석재	-	-	-	-	-	-	외부특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습벽 : 블럭/PE계 배수판/EPS시스템/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 등을 프로젝트 기준에 맞추어 적용
** 최하층의 경우 배수판 + 무근콘크리트 시공
** 지하주차장 바닥마감재 엠보싱처리- 지하주차램프 진/출입부분, 코너부, 교차부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1. 인테리어 마감사항은 건본주택 마감기준을 우선함.
2. 재료마감표와 도면이 상이한 경우 재료마감표를 우선함.
3. 화장실, 발코니, 지하주차장 등 구배를 요하는 바닥마감은 구배에 따라 두께가 상이함.
4. 화장실, 샤워실의 바닥마감재는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설치 또는 미끄럼방지 마감 처리할 것
5. 공용홀과 진입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설치 또는 미끄럼방지 마감 처리할 것
6. 욕실난방의 경우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는 판넬히팅 제외.
7. ELEV홀 천장 마감은 세대 스프링 쿨러 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천장 마감은 불연재료 적용할 것)
8. 고정형 가구 및 거울(현관, 주방, 욕실, 드레스룸 등)이 설치되는 곳의 바닥, 벽 , 천장에는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아니함.
9. 각종 인증과 관련된 자재를 확인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것.
10. 액체방수 높이
   - 벽 : H=1,200
   - 욕조,샤워부스 : H=1,800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실내 재료마감표-2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42

■ 실내재료마감표 (부대복리시설)

구분		실명	바닥		걸레받이		벽		천장		비고
			바탕	마감	바탕	마감	바탕	마감	바탕	마감	
부대복리시설	휘트니스	휘트니스	바탕몰탈	지정마감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걸레받이용 페인트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지정 페인트	콘크리트	지정 텍스	
		창고	바탕몰탈	지정마감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걸레받이용 페인트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지정 페인트	콘크리트	지정 텍스	
		화장실(남/여)	액체방수+바탕몰탈	지정 타일	-	-	액체방수+바탕몰탈	지정 타일	-	지정 텍스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바탕몰탈	지정마감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걸레받이용 페인트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OR 석고보드	지정 페인트	경량철골천장틀	지정 텍스	
		입주자집회소	바탕몰탈	지정마감	콘크리트 OR /시멘트몰탈	걸레받이용 페인트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지정 페인트	경량철골천장틀	지정 텍스	
		로비, 홀	바탕몰탈	지정마감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걸레받이용 페인트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지정 페인트	콘크리트	지정 텍스	
		방재실	액세스 플로어	전도성 타일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걸레받이용 페인트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지정 페인트	경량철골천장틀	지정 텍스	
	경비실	경비실	바탕몰탈	지정마감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걸레받이용페인트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지정 페인트	경량철골천장틀	지정 텍스	
		화장실	액체방수+바탕몰탈	지정 타일	-	-	액체방수+바탕몰탈	지정 타일	경량철골천장틀	지정 텍스	
		근로자 휴게실(남/여)	바탕몰탈	지정 마감	콘크리트 /시멘트몰탈/석고보드	지정 걸레받이	콘크리트 /시멘트몰탈/석고보드	지정 페인트	경량철골천장틀	지정 텍스	바닥난방시 전기판넬 적용
		MDF	액세스 플로어	전도성 타일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걸레받이용 페인트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지정 페인트	경량철골천장틀	지정 텍스	
	경로당	현관	바탕몰탈	지정 타일	콘크리트 /시멘트몰탈/석고보드	지정 걸레받이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지정 페인트	-	지정 텍스	
		방/오락실/주방	판넬히팅	지정마감	콘크리트 /시멘트몰탈/석고보드	지정 걸레받이	콘크리트 /시멘트몰탈/석고보드	지정 벽지	경량철골천장틀 /석고보드	지정 텍스	
		취미실	판넬히팅	지정마감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지정 걸레받이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지정 벽지	경량철골천장틀 /석고보드	지정 텍스	
		창고	판넬히팅	지정마감	콘크리트 /시멘트몰탈/석고보드	지정 걸레받이	콘크리트 /시멘트몰탈/석고보드	지정 벽지	경량철골천장틀 /석고보드	지정 텍스	
		화장실(남/여)	액체방수+바탕몰탈	지정 타일	-	-	액체방수+바탕몰탈	지정 타일	-	지정 텍스	
		다용도실/보일러실	액체방수+바탕몰탈	지정 타일	-	-	액체방수+바탕몰탈	지정 타일	-	지정 텍스	
외부		외 벽	-	-	-	-	콘크리트	/지정 석재/수성페인트	-	-	
		평지붕	지정방수	무근콘크리트	-	-	-		-	-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1. 인테리어 마감사항은 건본주택 마감기준을 우선함.
2. 재료마감표와 도면이 상이한 경우 재료마감표를 우선함.
3. 화장실, 발코니, 지하주차장 등 구배를 요하는 바닥마감은 구배에 따라 두께가 상이함.
4. 화장실, 샤워실의 바닥마감재는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설치 또는 미끄럼방지 마감 처리할 것
5. 공용홀과 진입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설치 또는 미끄럼방지 마감 처리할 것
6. 욕실난방의 경우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는 판넬히팅 제외.
7. ELEV홀 천장 마감은 세대 스프링 쿨러 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천장 마감은 불연재료 적용할 것)
8. 고정형 가구 및 거울(현관, 주방, 욕실, 드레스룸 등)이 설치되는 곳의 바닥, 벽 , 천장에는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아니함.
9. 각종 인증과 관련된 자재를 확인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것.
10. 액체방수 높이
    - 벽 : H=1,200
    - 욕조,샤워부스 : H=1,800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실내 재료마감표-3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43

■ 주거부분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1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외벽-A1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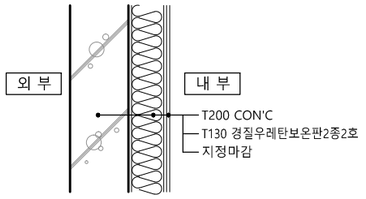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외표면			0.043
1	콘크리트	200	1.600	0.125
2	경질우레탄보온판2종2호	130	0.023	5.652
3	지정마감	-	-	-
	내표면			0.110
	합 계			5.930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169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0.170이하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외벽-A2 (직접)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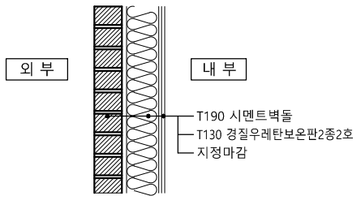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외표면			0.043
1	시멘트벽돌	190	0.600	0.317
2	경질우레탄보온판2종2호	130	0.023	5.652
3	지정마감	-	-	-
	내표면			0.110
	합 계			6.122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163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0.170이하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외벽-A3 (직접)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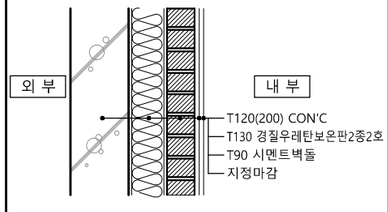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외표면			0.043
1	콘크리트	120	1.600	0.075
2	경질우레탄보온판2종2호	130	0.023	5.652
3	시멘트벽돌	90	0.600	0.150
4	지정마감	-	-	-
	내표면			0.110
	합 계			6.030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166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0.17이하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 6조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mm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영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주거)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1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51

■ 주거부분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2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외벽-B1 (간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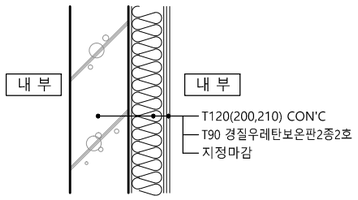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외표면			0.110
1	콘크리트	120	1.600	0.075
2	경질우레탄보온판2종2호	90	0.023	3.913
3	지정마감	-	-	-
	내표면			0.110
	합 계			4.208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238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0.24이하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외벽-B2 (간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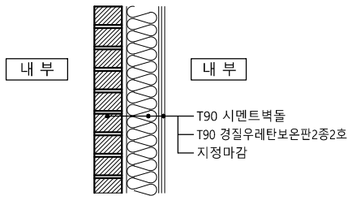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외표면			0.110
1	시멘트벽돌	90	0.600	0.150
2	경질우레탄보온판2종2호	90	0.023	3.913
3	지정마감	-	-	-
	내표면			0.110
	합 계			4.283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233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0.24이하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외벽-B3 (간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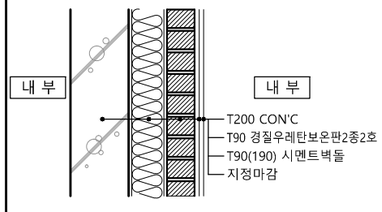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외표면			0.110
1	콘크리트	200	1.600	0.125
2	경질우레탄보온판2중2호	90	0.023	3.913
3	시멘트벽돌	90	0.600	0.150
4	지정마감	-	-	-
	내표면			0.110
	합 계			4.408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227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0.24이하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 6조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mm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영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주거)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2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52

■ 주거부분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3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최상층 지 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R1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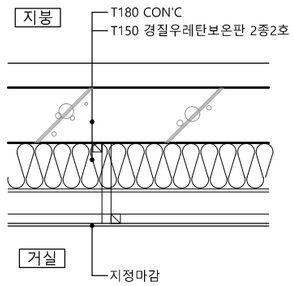

열관류율 계산결과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외표면			0.043
1	콘크리트	180	1.600	0.113
2	경질우레탄보온판2종2호	150	0.023	6.522
3	지정마감	-	-	-
	내표면	145		0.086
	합 계			6.764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148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0.15이하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층 간 바 닥	난방바닥	

* 시험성적서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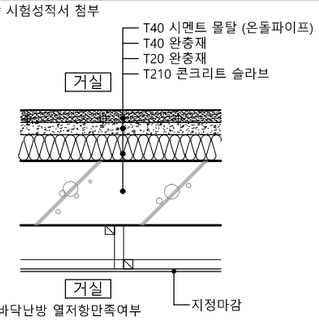

*바닥난방 열저항만족여부

	기준(중부2	적용 열저항 값	만족여부
층간바닥	0.741이상	1.026(완충재)+0.625(완충재) =1.651	OK

열관류율 계산결과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내표면			0.086
1	시멘트몰탈	40	1.400	0.029
2	완충재 (SIB40B)	40	0.039	1.026
3	완충재 (EV20B6)	20	0.032	0.625
4	콘크리트	210	1.600	0.131
5	지정마감	-	-	-
	내표면			0.086
	합 계			1.983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504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0.81이하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비난방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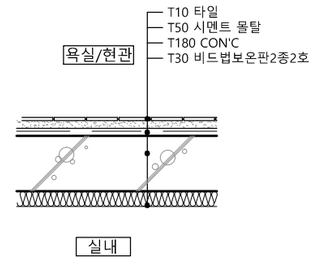

열관류율 계산결과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내표면			0.086
1	타일	10	1.300	0.008
2	시멘트몰탈	50	1.400	0.036
3	콘크리트	180	1.600	0.113
4	비드법보온판2종2호	30	0.032	0.938
5	외표면			0.086
	합 계			1.267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789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0.81이하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 6조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mm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영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주거)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3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53

■ 주거부분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4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최하층 바 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F1 (난방직접)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F2 비난방직접)						

*시험성적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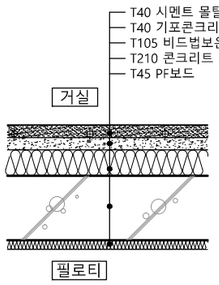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내표면			0.086
1	시멘트몰탈	40	1.400	0.029
2	기포콘크리트 0.4품	40	0.130	0.308
3	비드법보온판 2종2호	105	0.032	3.281
4	콘크리트	210	1.600	0.131
5	PF보드	45	0.020	2.250
	외표면			0.043
	합 계			6.128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163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0.170이하

*바닥난방 열저항만족여부

	기준(중부2)	적용 열저항 값	만족여부
최하층 직접	3.529이상	0.308(기포콘0.4품)+3.281(비드법보온판 2종1호) =3.589	OK

*시험성적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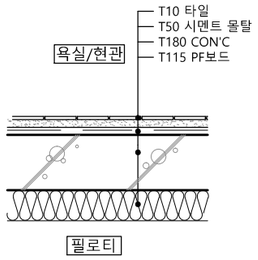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내표면			0.086
1	타일	10	1.300	0.008
2	시멘트몰탈	50	1.400	0.036
3	콘크리트	180	1.600	0.113
4	PF보드	115	0.020	5.750
5	외표면			0.043
	합 계			6.036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166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0.170이하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 6조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mm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영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주거)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4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54

■ 주거부분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5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외기직접 창	G1	외 부 / 내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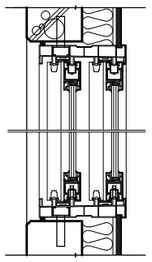 ※ 시공시 열관류율 값이 법적기준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재 료 명	유리 및 공기층 두께 (w/m·k)	
			내측 : 22mm 일면로이유리 소프트코팅	5CL + 12Air + 5LE	PVC
			외측 : 22mm 일반복층유리	5CL + 12Air + 5CL	
			기타	시험성적서 첨부	
			기밀성등급	1등급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890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0.900이하
외기간접 창	G2	발코니 / 침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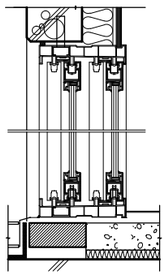 ※ 시공시 열관류율 값이 법적기준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재 료 명	유리 및 공기층 두께 (w/m·k)	프레임 종류
			내측 : 16mm 일반복층유리 -	5CL + 6Air + 5CL	PVC
			외측 : 16mm 일반복층유리 -	5CL + 6Air + 5CL	
			기타	시험성적서 첨부	
			기밀성등급	1등급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1.495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1.500이하
발코니 외측창 및 대피공간 외측창	G3	외 기 /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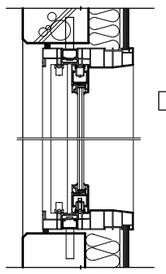 ※ 시공시 열관류율 값이 법적기준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재 료 명	유리 및 공기층 두께 (w/m·k)	프레임 종류
			내측 : 22mm 일면로이유리	5CL + 12Air + 5LE	PVC
			기타	시험성적서 첨부	
			기밀성등급	-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2.387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2.400이하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 6조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mm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영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주거)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5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55

■ 주거부분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6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세대 현관문	D1 (세대현관문) (간접)	홀 /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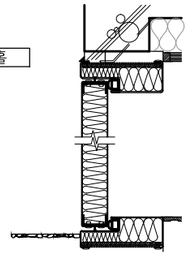	재 료 명	유리 및 공기층 두께 (w/m·k)	프레임 종류				
			세대내현관문	단열두께 20mm이상	금속재				
				열교차단재 미적용					
			기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					
			기밀성등급	2등급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1.800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1.800이하				
외기 간접	D2	KICT-R-K-2014-01822-1~2 발코니 /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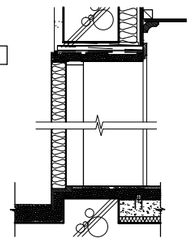 ※ 시공시 열관류율 값이 법적기준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재 료 명	유리 및 공기층 두께 (w/m·k)	프레임 종류				
			PVC단열차음도어	문틀 : PVC(스틸보강) 문짝 : BT-SHI 판넬27mm +(실외)차음재3mm +압출법보온판1호20mm (40kg/㎥)+차음재 4mm(실내)	PVC				
			기타	시험성적서 첨부					
			기밀성등급	-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1.400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1.500이하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 6조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mm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영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주거)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6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56

■ 비주거부분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1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외벽-A1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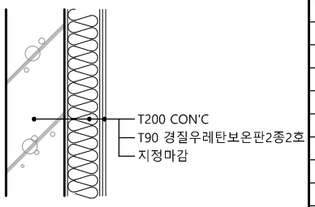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외표면			0.043
1	콘크리트	200	1.600	0.125
2	경질우레탄보온판2종2호	90	0.023	3.913
3	지정마감	-	-	-
	내표면			0.110
	합 계			4.191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239
	법적열관류율(W/㎡・k)			0.240이하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 6조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mm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영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애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建築士 趙 淵 秀

특기사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비주거)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1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57

■ 비주거부분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2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외벽-B1 (간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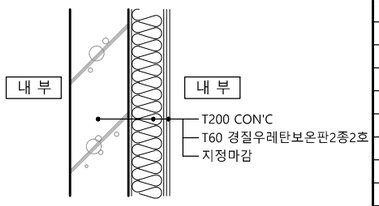					
	외벽-B2 (간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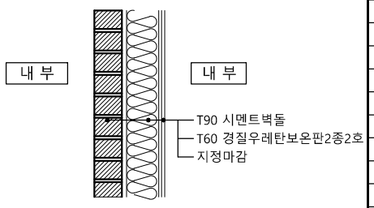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외표면			0.110
1	콘크리트	200	1.600	-
2	경질우레탄보온판2종2호	60	0.023	2.609
3	지정마감	-	-	-
	내표면			0.110
	합 계			2.954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339
	법적열관류율(W/㎡・k)			0.340이하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외표면			0.110
1	시멘트벽돌	90	0.600	0.150
2	경질우레탄보온판2종2호	60	0.023	2.609
3	지정마감	-	-	-
	내표면			0.110
	합 계			2.979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336
	친환경주택열관류율(W/㎡・k)			0.34이하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 6조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mm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영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비주거)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2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58

■ 비주거부분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3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최상층 지 붕	지붕-R1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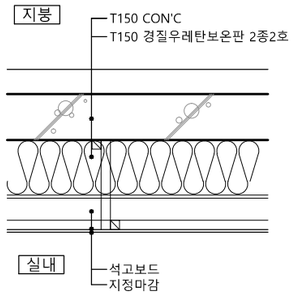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외표면			0.043
1	지정마감	-	-	-
2	콘크리트	150	1.600	0.094
3	경질우레탄보온판2종2호	150	0.023	6.522
4	석고보드	9.5	0.180	0.053
5	지정마감	-	-	-
	내표면			0.086
	합 계			6.798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147
	법적열관류율(W/㎡・k)			0.15이하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 6조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mm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영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애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建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비주거)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3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59

■ 비주거부분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4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최하층 바 닥	바닥-F1 (직접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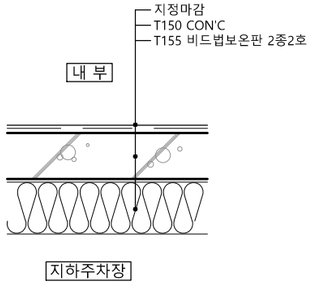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내표면			0.086
1	지정마감	-	-	-
2	콘크리트	150	1.600	0.094
3	비드법보온판 2종2호	155	0.032	4.844
4	외표면			0.043
	합 계			5.067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197
	법적열관류율(W/㎡・k)			0.200이하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최하층 바 닥	바닥-F3 (간접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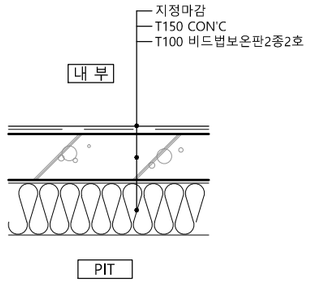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내표면			0.086
1	지정마감	-	-	-
2	콘크리트	150	1.600	0.094
3	비드법보온판2종2호	100	0.032	3.125
4	외표면			0.150
	합 계			3.455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289
	법적열관류율(W/㎡・k)			0.29이하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바닥-F4 (간접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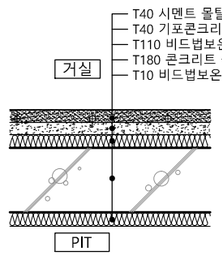	

*바닥난방 열저항만족여부

	기준(중부2	적용 열저항 값	만족여부
최하층 간접	2.500이상	0.308(기포콘0.4품)+3.438(비드법2종2호) =3.746	OK

	재 료 명	두께 (mm)	열전도율 (W/m.K)	열관류저항 (㎡K/W)
	내표면			0.086
1	시멘트몰탈	40	1.400	0.029
2	기포콘크리트 0.4품	40	0.130	0.308
3	비드법보온판2종2호	110	0.032	3.438
4	콘크리트	180	1.600	0.113
5	비드법보온판2종2호	10	0.032	0.313
	외표면			0.150
	합 계			4.437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0.225
	법적열관류율(W/㎡・k)			0.240이하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 6조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mm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영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비주거)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4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60

■ 비주거부분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5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외기직접 창	G1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고정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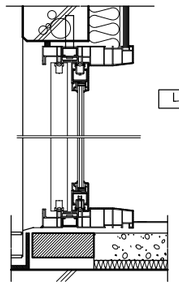 외 부 / 내 부 ※ 시공시 열관류율 값이 법적기준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재 료 명	유리 및 공기층 두께 (w/m·k)	프레임 종류
			두께 : 24mm 로이복층유리	6LE+12Ar+6CL	알루미늄
					FIX
			기타	시험성적서 첨부	
			기밀성등급	1등급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1.477 5
			법적열관류율(W/㎡・k)		1.500이하
	G2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스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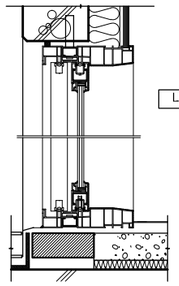 외 부 / 내 부 ※ 시공시 열관류율 값이 법적기준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재 료 명	유리 및 공기층 두께 (w/m·k)	프레임 종류
			두께 : 24mm 로이복층유리	5CL+14Ar+5LE	알루미늄
					스윙
			기타	시험성적서 첨부	
			기밀성등급	1등급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1.288
			법적열관류율(W/㎡・k)		1.500이하
	G3	(경비실 미서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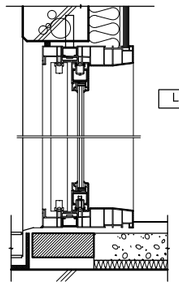 외 부 / 내 부 ※ 시공시 열관류율 값이 법적기준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재 료 명	유리 및 공기층 두께 (w/m·k)	프레임 종류
			두께 : 24mm 로이복층유리	5LE+14Ar+5CL	알루미늄
					미서기
			기타	시험성적서 첨부	
			기밀성등급	1등급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1.348
			법적열관류율(W/㎡・k)		1.500이하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외기직접 창	G4	(근로자 휴게실, MDF 미서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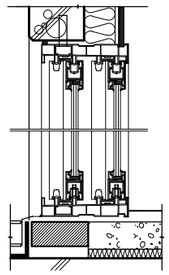 외 부 / 내 부 ※ 시공시 열관류율 값이 법적기준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재 료 명	유리 및 공기층 두께 (w/m·k)	프레임 종류
			내측 : 24mm 일반복층유리 -	6CL + 12Air + 6CL	알루미늄
					미서기
			외측 : 24mm 로이복층유리 -	6LE + 12Ar + 6LE	
			기타	시험성적서 첨부	
			기밀성등급	1등급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1.370
			법적열관류율(W/㎡・k)		1.500이하
	G5	(경로당 미서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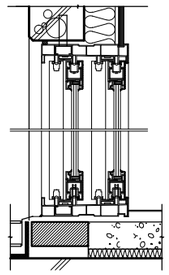 외 부 / 내 부 ※ 시공시 열관류율 값이 법적기준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재 료 명	유리 및 공기층 두께 (w/m·k)	프레임 종류
			내측 : 16mm 일반복층유리 -	5CL + 6Air + 5CL	PVC
			외측 : 16mm 일반복층유리 -	5CL + 6Air + 5CL	
			기타	시험성적서 첨부	
			기밀성등급	1등급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1.495
			법적열관류율(W/㎡・k)		1.500이하
외기간접 창	G6	(주민운동시설 고정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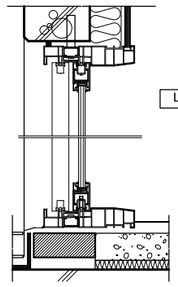 외 부 / 내 부 ※ 시공시 열관류율 값이 법적기준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재 료 명	유리 및 공기층 두께 (w/m·k)	프레임 종류
			두께 : 24mm 로이복층유리	6CL+12Ar+6LE	알루미늄
					FIX
			기타	시험성적서 첨부	
			기밀성등급	1등급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1.695
			법적열관류율(W/㎡・k)		1.800이하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 6조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mm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영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비주거)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5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61

■ 비주거부분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6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재 료 명	유리 및 공기층 두께 (w/m·k)	프레임 종류
외기직접 문	D1	(근로자 휴게실, 경비실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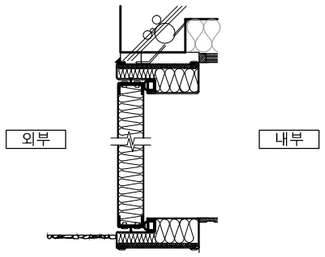 ※ 시공시 열관류율 값이 법적기준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고기밀성단열문	문틀 : EGI 1.6T +그라스울보온판(64K) 문짝 : EGI 0.8T +미네랄울 100K 48T + EGI 0.8T	강철재
			기타	시험성적서 첨부	
			기밀성등급	1등급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1.480 8
			법적열관류율(W/㎡・k)		1.500이하
	D3 (방풍구조문)	(경로당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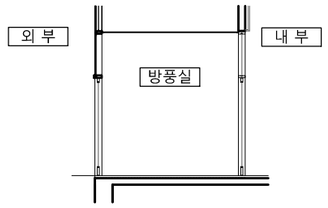 	방풍구조문	THK16 복층유리	알루미늄,스테인레스
			기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기밀성등급	-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1.500
			법적열관류율(W/㎡・k)		1.500이하

구 분	적용범위	설 계 적 용	열관류율 계산결과		
			재 료 명	유리 및 공기층 두께 (w/m·k)	프레임 종류
외기간접 문	D4	(경로당 다용도실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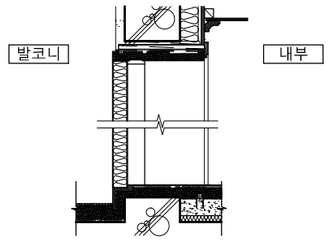 ※ 시공시 열관류율 값이 법적기준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PVC단열차음도어	문틀 : PVC(스틸보강) 문짝 : BT-SHI 판넬27mm +(실외)차음재3mm +압출법보온판1호20mm (40kg/m³)+차음재 4mm(실내)	PVC
			기타	시험성적서 첨부	
			기밀성등급	-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1.400
			법적열관류율(W/㎡・k)		1.800이하
	D5	(주민운동시설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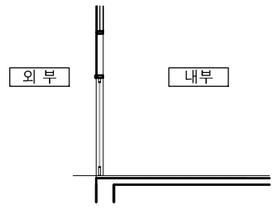 	두께 : 24mm 일면로이유리	6LE+12Ar+6LE	알루미늄 양개유리문
			기타	시험성적서 첨부	
			기밀성등급	1등급	
			열관류율(W/㎡・K) (1/열전도저항 합계)		1.450
			법적열관류율(W/㎡・k)		1.800이하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 6조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mm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영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建築士 趙 淵 秀

특기사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비주거)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6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62

■ 84형 단위세대 면적산출 근거표

단위세대 중심선 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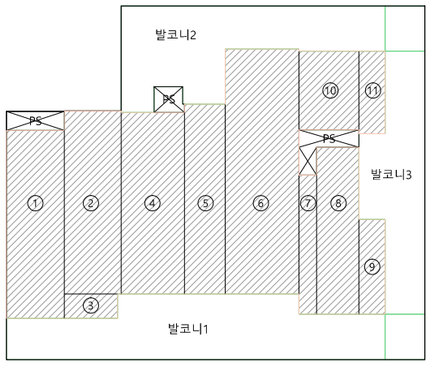

번호	계 산 식	면적(M2)	비 고
1	1.8850 X 6.1350	11.5645	
2	1.8550 X 5.9700	11.0743	
3	1.7400 X 0.7950	1.3833	
4	2.0650 X 5.9250	12.2351	
5	1.3350 X 6.1900	8.2637	
6	2.4050 X 7.9900	19.2159	
7	0.5700 X 4.5450	2.5907	
8	1.3850 X 5.4450	7.5413	
9	0.8500 X 3.0900	2.6265	
10	1.9550 X 2.5650	5.0146	
11	0.8500 X 2.6900	2.2865	
소계		83.7964	

단위세대 전용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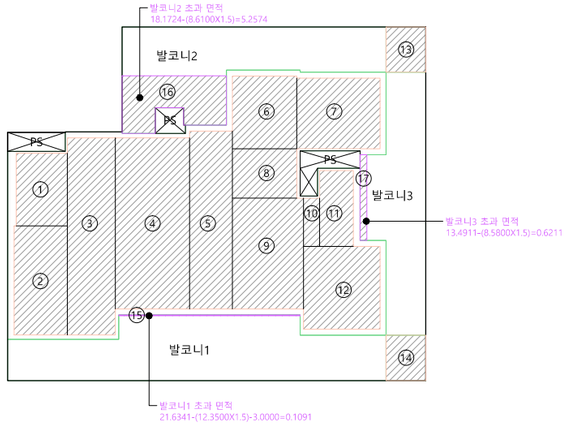

번호	계 산 식	면적(M2)	비 고
1	1.6700 X 2.3700	3.9579	
2	1.7400 X 3.5500	6.1770	
3	1.5600 X 6.4200	10.0152	
4	2.4200 X 5.5800	13.5036	
5	1.4000 X 5.8000	8.1200	
6	2.1000 X 2.3700	4.9770	세대내전용면적 = 75.1015
7	2.7200 X 2.3000	6.2560	
8	2.1000 X 1.6100	3.3810	
9	2.3200 X 3.6200	8.3984	
10	0.5300 X 1.5800	0.8374	
11	1.1000 X 2.4800	2.7280	
12	2.5000 X 2.7000	6.7500	
13	1.2950 X 1.4750	1.9101	발코니1 초과 면적
14	1.2950 X 1.4750	1.9101	발코니2 초과 면적
15	21.6341 -(12.3500 X 1.5) -3.000	0.1091	발코니1 초과 면적(대피공간 대체시설 설치)
16	18.1724 -(8.6100 X 1.5)	5.2574	발코니2 초과 면적
17	13.4911 -(8.5800 X 1.5)	0.6211	발코니3 초과 면적
소계		84.9093	

단위세대 건축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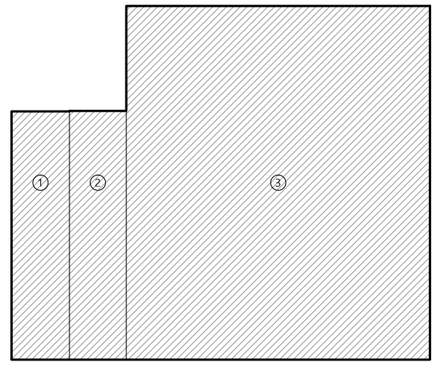

번호	계 산 식	면적(M2)	비 고
1	1.8850 X 8.0900	15.2496	
2	1.8550 X 8.1050	15.0348	
3	9.9050 X 11.5300	114.2047	
소계		144.4891	

단위세대 벽체공용면적 산출표

	면적(M2)	비고
중심선면적	83.7964	
전용면적	75.1015	벽체공용면적 산출용 세대내 전용면적
벽체공용면적	83.7964 - 75.1015 = 8.6949	세대내중심선면적 - 세대내전용면적
바닥면적	84.9093 + 8.6949 = 93.6042	단위세대 전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실별 전용면적 산출표

실명	면적(M2)	비고
침실1	7.1049	
침실2	12.0099	
침실3	6.0030	
거실	24.5271	
주방	15.2694	
부부욕실	3.6087	
가족욕실	3.6217	
현관	2.9568	
소계	75.1015	

서비스면적 산출표

실명	계 산 식	면적(M2)	비 고				
			발코니면적	공제면적	전용면적	확장면적	비확장면적
발코니1	AUTOCAD 구적	23.5442	23.5442	21.5250	2.0192	18.6867	4.8575
발코니2	AUTOCAD 구적	20.0825	20.0825	12.9150	7.1675	13.8975	6.1850
발코니3	AUTOCAD 구적	13.4911	13.4911	12.8700	0.6211	13.4911	0
소계			57.1178	47.3100	9.8078	46.0753	11.0425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建築士 趙 淵 秀

특기사항 Notes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2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84형 단위세대
면적산출 근거표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71

(101동) 면적산출 근거표-1

축 척 A1:1/ 200, A3:1/ 400

101동

■ 지상 1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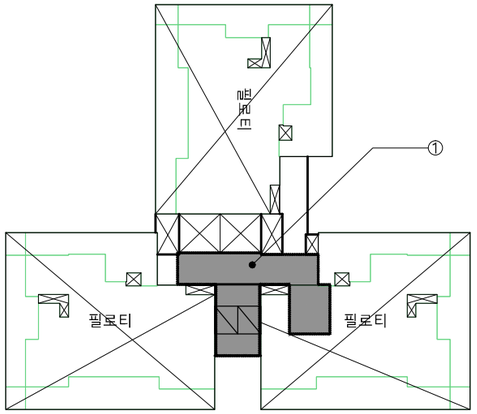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소계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40.2994
	소계	40.2994
바닥 면적 합계		40.2994

101동

■ 지상 2~17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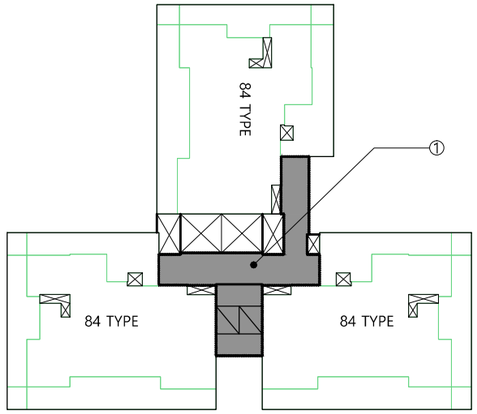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바닥면적		93.6042 X 3 세대 = 280.8126
소계		280.8126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46.4854
	소계	46.4854
바닥 면적 합계		327.2980

101동

■ 지상 18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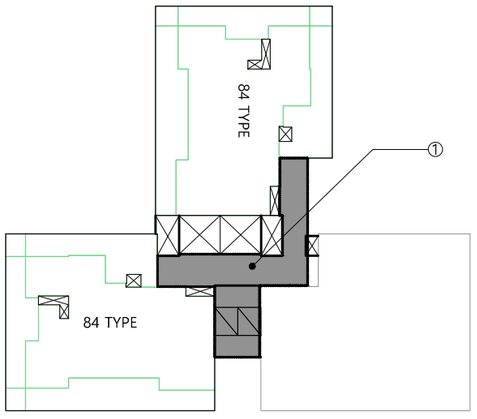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바닥면적		93.6042 X 2 세대 = 187.2084
소계		187.2084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44.6441
	소계	44.6441
바닥 면적 합계		231.8525

101동

■ 지상 19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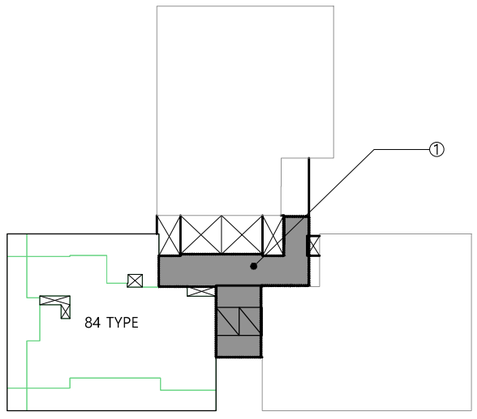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바닥면적		93.6042 X 1 세대 = 93.6042
소계		93.6042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37.7153
	소계	37.7153
바닥 면적 합계		131.3195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101동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4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01동)
면적산출 근거표-1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72

(101동) 면적산출 근거표-2

축 척 A1:1/ 200, A3:1/ 400

101동

■ 지상 20~26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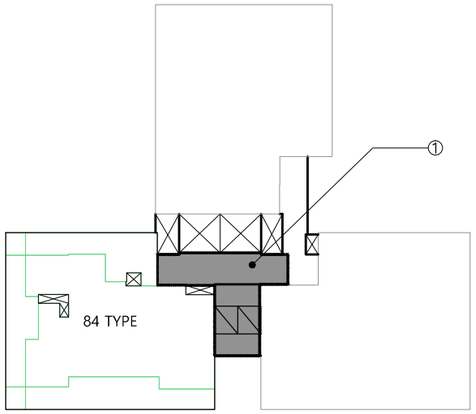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바닥면적		93.6042 X 1 세대 = 93.6042	
소계		93.6042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31.0337	
	소계	31.0337	
바닥 면적 합계		124.6379	

101동

■ 건축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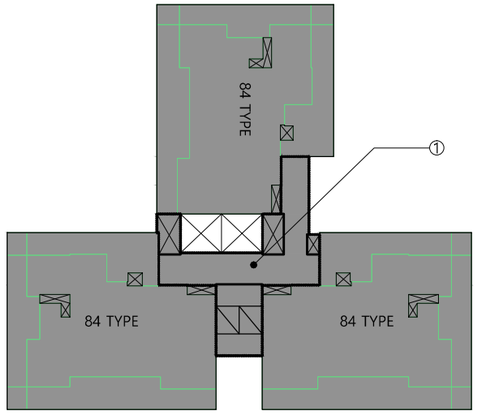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건축면적		144.4891 X 3 세대 = 433.4673	
소계		433.4673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55.0823	
	소계	55.0823	
건축 면적 합계		488.5496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101동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4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01동)
면적산출 근거표-2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73

(102동) 면적산출 근거표-1

축 척 A1:1/ 200, A3:1/ 400

102동 ■ 지상 1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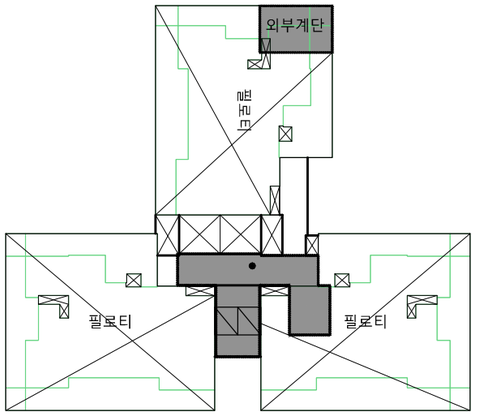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외부계단		AUTOCAD 구적임 = 14.3960
소계		14.3960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40.2994
	소계	40.2994
바닥 면적 합계		54.6954

102동 ■ 지상 2~19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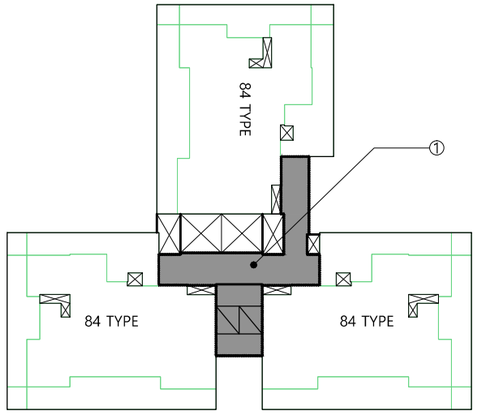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바닥면적		93.6042 X 3 세대 = 280.8126
소계		280.8126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46.4854
	소계	46.4854
바닥 면적 합계		327.2980

102동 ■ 지상 20~28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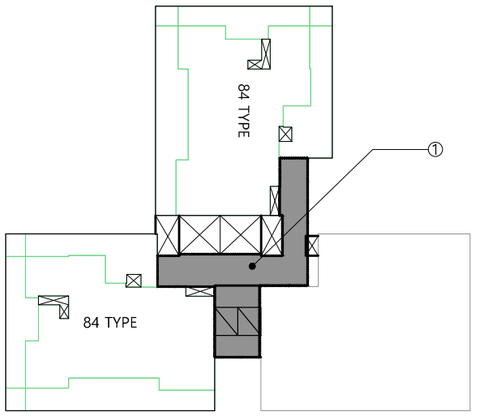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바닥면적		93.6042 X 2 세대 = 187.2084
소계		187.2084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44.6441
	소계	44.6441
바닥 면적 합계		231.8525

102동 ■ 지상 29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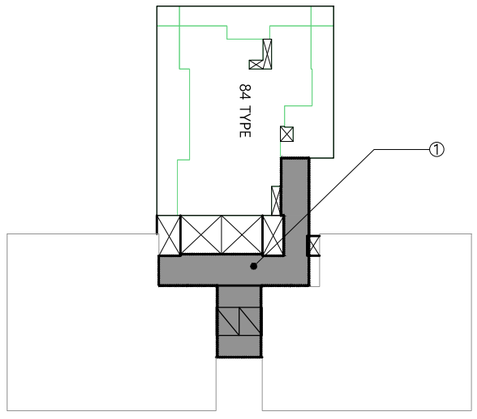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바닥면적		93.6042 X 1 세대 = 93.6042
소계		93.6042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44.0179
	소계	44.0179
바닥 면적 합계		137.6221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102동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4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02동) 면적산출 근거표-1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74

(102동) 면적산출 근거표-2

축 척 A1:1/ 200, A3:1/ 400

102동

■ 건축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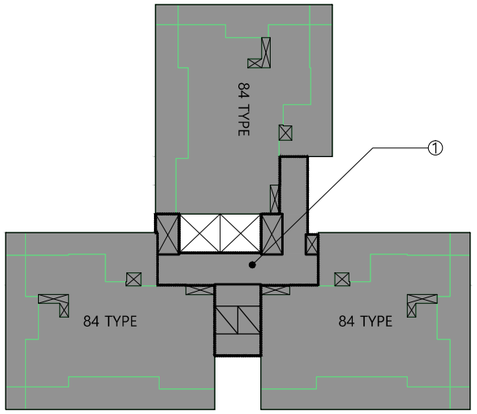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건축면적		144.4891 X 3 세대 = 433.4673
소계		433.4673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55.0823
	소계	55.0823
건축 면적 합계		488.5496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102동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4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02동)
면적산출 근거표-2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75

(103동) 면적산출 근거표-1

축 척 A1:1/ 200, A3:1/ 400

103동 ■ 지상 1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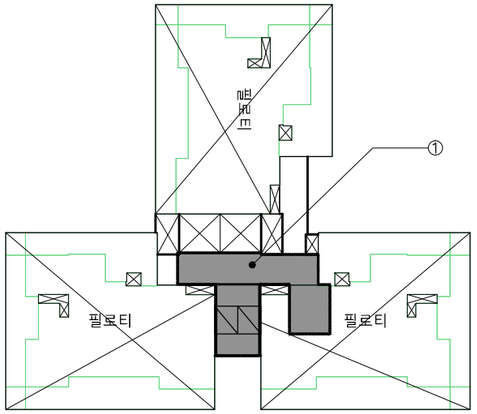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소계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40.2994
	소계	40.2994
바닥 면적 합계		40.2994

103동 ■ 지상 2~18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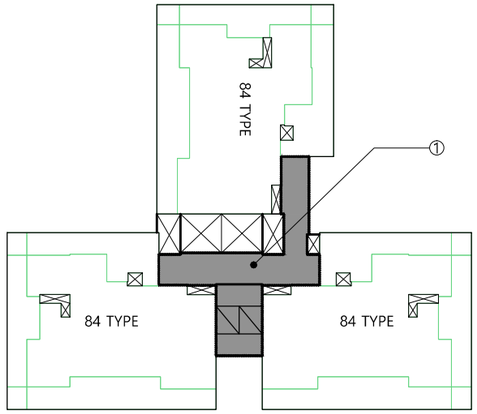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바닥면적		93.6042 X 3 세대 = 280.8126
소계		280.8126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46.4854
	소계	46.4854
바닥 면적 합계		327.2980

103동 ■ 지상 19~24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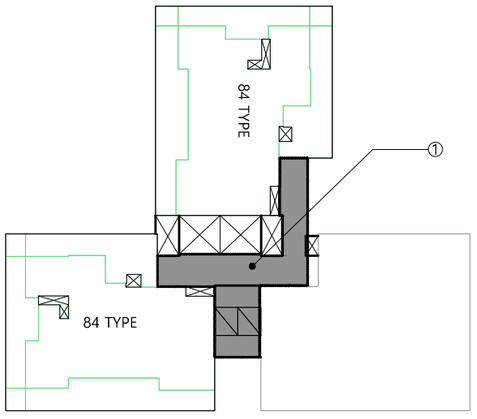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바닥면적		93.6042 X 2 세대 = 187.2084
소계		187.2084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44.6441
	소계	44.6441
바닥 면적 합계		231.8525

103동 ■ 지상 25~27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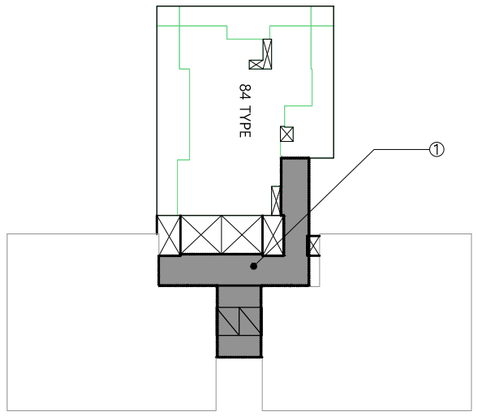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바닥면적		93.6042 X 1 세대 = 93.6042
소계		93.6042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44.0179
	소계	44.0179
바닥 면적 합계		137.6221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103동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4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03동)
면적산출 근거표-1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76

(103동) 면적산출 근거표-2

축 척 A1:1/ 200, A3:1/ 400

103동

■ 건축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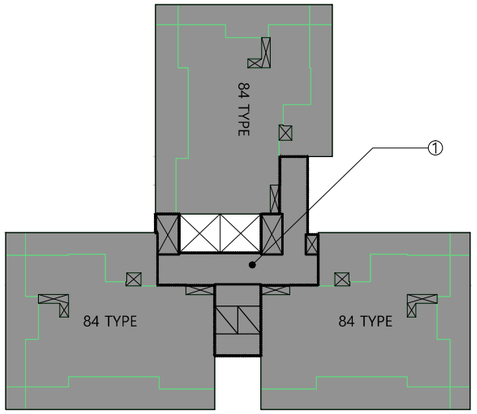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건축면적		144.4891 X 3 세대 = 433.4673
소계		433.4673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55.0823
	소계	55.0823
건축 면적 합계		488.5496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103동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4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03동)
면적산출 근거표-2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77

(104동) 면적산출 근거표

축 척 A1:1/ 200, A3:1/ 400

104동

■ 지상 1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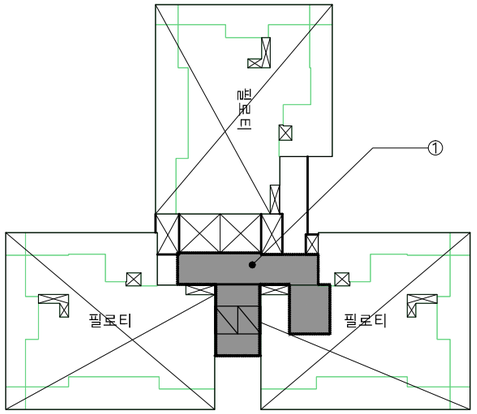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소계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40.2994
	소계	40.2994
바닥 면적 합계		40.2994

104동

■ 지상 2~11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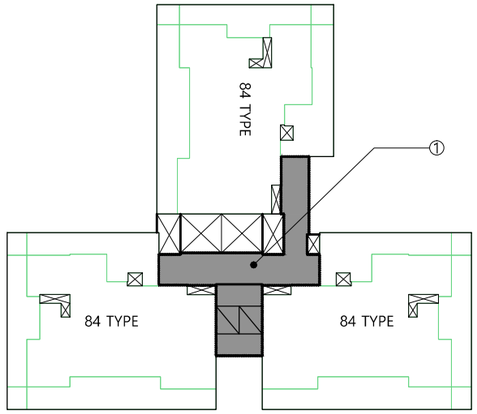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바닥면적		93.6042 X 3 세대 = 280.8126
소계		280.8126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46.4854
	소계	46.4854
바닥 면적 합계		327.2980

104동

■ 지상 12~19층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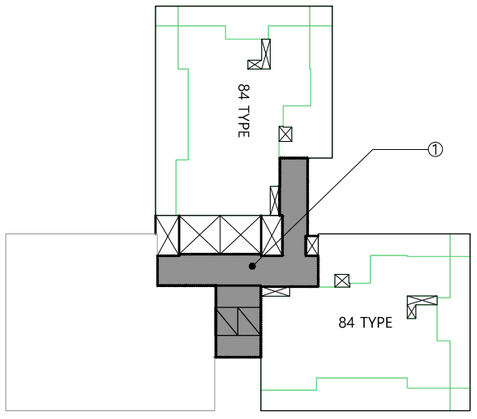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바닥면적		93.6042 X 2 세대 = 187.2084
소계		187.2084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45.8591
	소계	45.8591
바닥 면적 합계		233.0675

104동

■ 건축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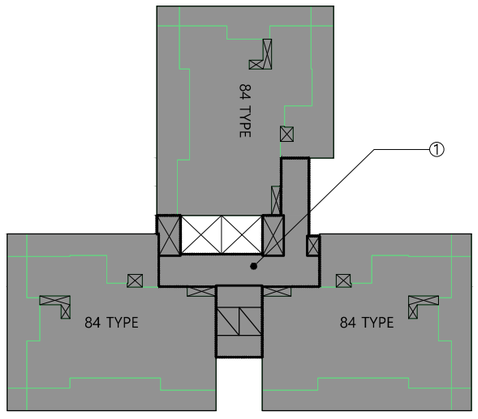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84 건축면적		144.4891 X 3 세대 = 433.4673
소계		433.4673
계단실 E/V 실	①	AUTOCAD 구적임 = 55.0823
	소계	55.0823
건축 면적 합계		488.5496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104동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4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04동)
면적산출 근거표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78

(지하주차장) 면적산출 근거표

축 척 A1:1/ 400, A3:1/ 800

■ 지하1층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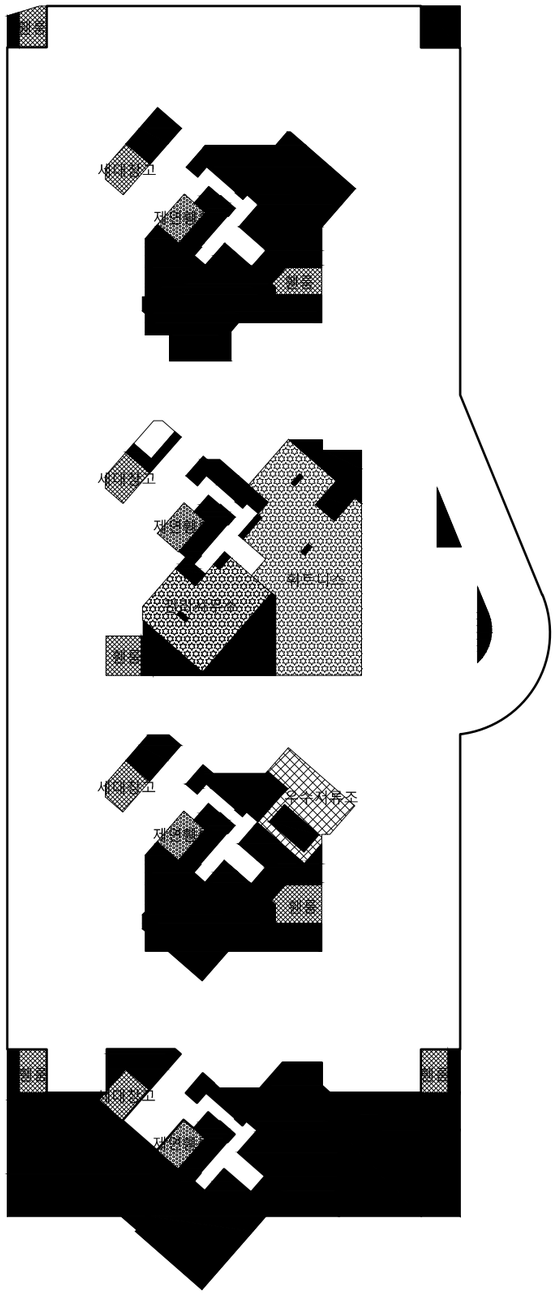

■ 지하2층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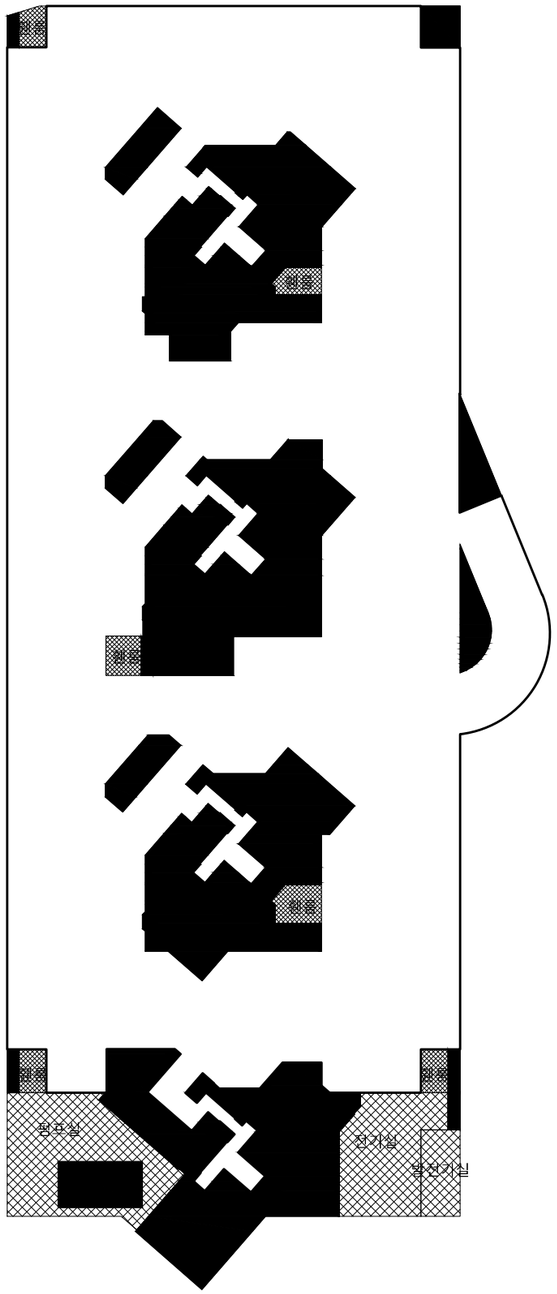

구 분			산 출 근 거 (m2)		
101동	지하1층 제연휀룸		AUTOCAD 구적임	=	19.7106 ㎡
102동	지하1층 제연휀룸		AUTOCAD 구적임	=	19.7106 ㎡
103동	지하1층 제연휀룸		AUTOCAD 구적임	=	19.7106 ㎡
104동	지하1층 제연휀룸		AUTOCAD 구적임	=	19.7106 ㎡
제연휀룸 합계					78.8424 ㎡
휀룸	지하1층	1	AUTOCAD 구적임	=	18.2182 ㎡
		2	AUTOCAD 구적임	=	20.6655 ㎡
		3	AUTOCAD 구적임	=	29.8939 ㎡
		4	AUTOCAD 구적임	=	20.1988 ㎡
		5	AUTOCAD 구적임	=	19.9163 ㎡
		6	AUTOCAD 구적임	=	23.6900 ㎡
	소 계				132.5827 ㎡
	지하2층	1	AUTOCAD 구적임	=	18.2182 ㎡
		2	AUTOCAD 구적임	=	20.6655 ㎡
		3	AUTOCAD 구적임	=	29.8939 ㎡
		4	AUTOCAD 구적임	=	20.1988 ㎡
		5	AUTOCAD 구적임	=	19.9163 ㎡
		6	AUTOCAD 구적임	=	23.6900 ㎡
	소 계				132.5827 ㎡
휀룸 합계					265.1654 ㎡
부대시설	휘트니스		AUTOCAD 구적임	=	329.7593 ㎡
	관리사무소		AUTOCAD 구적임	=	134.8560 ㎡
	외부계단		AUTOCAD 구적임	=	14.0644 ㎡
	전기실		AUTOCAD 구적임	=	179.4051 ㎡
	발전기실		AUTOCAD 구적임	=	57.6300 ㎡
	펌프실		AUTOCAD 구적임	=	233.2237 ㎡
	우수저류조		AUTOCAD 구적임	=	76.8224 ㎡
부대시설 합계					1,025.7609 ㎡
지하 주차장	지하1층		AUTOCAD 구적임	=	6,824.4269 ㎡
	지하2층		AUTOCAD 구적임	=	6,807.8361 ㎡
지하주차장 합계					13,632.2630 ㎡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지하
주차장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8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지하주차장)
면적산출 근거표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79

(부대시설) 면적산출 근거표

축 척 A1:1/ 100, A3:1/ 200

■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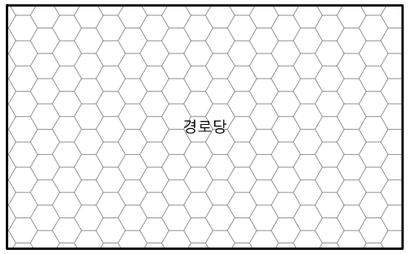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경로당	AUTOCAD 구적 = 102.4260	
소계	102.4260	
바닥 면적 합계		

■ 건축면적 산출표

구분	산 출 근 거 (m2)	
경로당	AUTOCAD 구적 = 102.4260	
소계	102.4260	
건축 면적 합계		

■ 바닥면적 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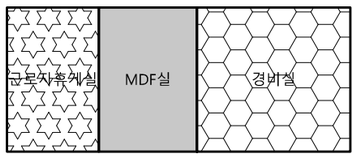

구분	산 출 근 거 (m2)	
근로자휴게실	AUTOCAD 구적 = 14.1000	
MDF실	AUTOCAD 구적 = 15.0400	
경비실	AUTOCAD 구적 = 23.5000	
소계	52.6400	
바닥 면적 합계		

■ 건축면적 산출표

구분	산 출 근 거 (m2)	
근로자휴게실 MDF실 경비실	AUTOCAD 구적 = 52.6400	
소계	52.6400	
건축 면적 합계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경로당

경비실

MDF실

근로자
휴게실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2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부대시설)
면적산출 근거표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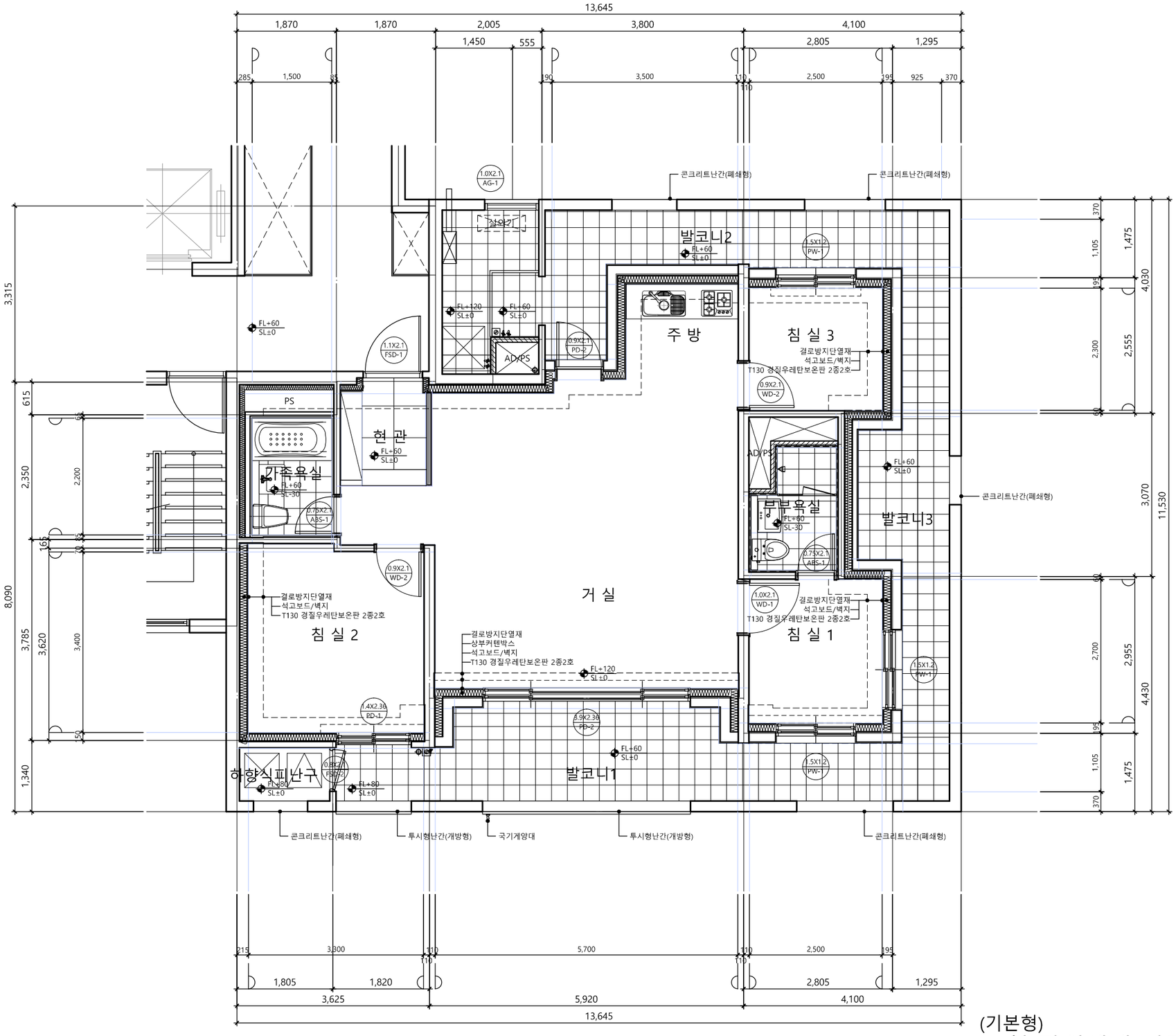

(기본형)
84형 단위세대 평면도

축 척 A1:1/ 40, A3:1/ 80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건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1. 인테리어 마감사항은 건본주택 마감 기준을 우선함.
2. 재료마감표와 도면이 상이한 경우 재료마감표를 우선함.
3. 화장실, 발코니, 지하주차장 등 구배를 요하는 바닥마감은 구배에 따라 두께가 상이함.
4. 화장실, 샤워실의 바닥마감재는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설치 또는 미끄럼방지 마감 처리할 것
5. 공용홀과 진입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설치 또는 미끄럼방지 마감 처리할 것
6. 욕실난방의 경우 사워부스 및 욕조하부는 판넬히팅 제외.
7. ELEV홀 천장 마감은 세대 스프링 쿨러 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천장 마감은 불연재료 적용할 것)
8. 고정형 가구 및 거울(현관, 주방, 욕실, 드레스룸 등)이 설치되는 곳의 바닥, 벽 , 천장에는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아니함.
9. 각종 인증과 관련된 자재를 확인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것.
10. 확장형세대와 기본형세대가 접하는 부위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단열조치할 것. (단, 기본형세대 발코니부분 설치)
11. 선흥통의 개소와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12. AD/PD 바닥은 배관슬리브 매입후 콘크리트로 타설할 것.
13. AD/PD 내부 설비배관설치 후 배관 주변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충진할 것.
14. 세대내에 설치되는 통신단자반, 세대분전반등은 인테리어도면 및 전기도면을 참조하여 시공할 것.
15. 지상2층 하향식피난구에 완강기설치.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8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기본형) 84형 단위세대 평면도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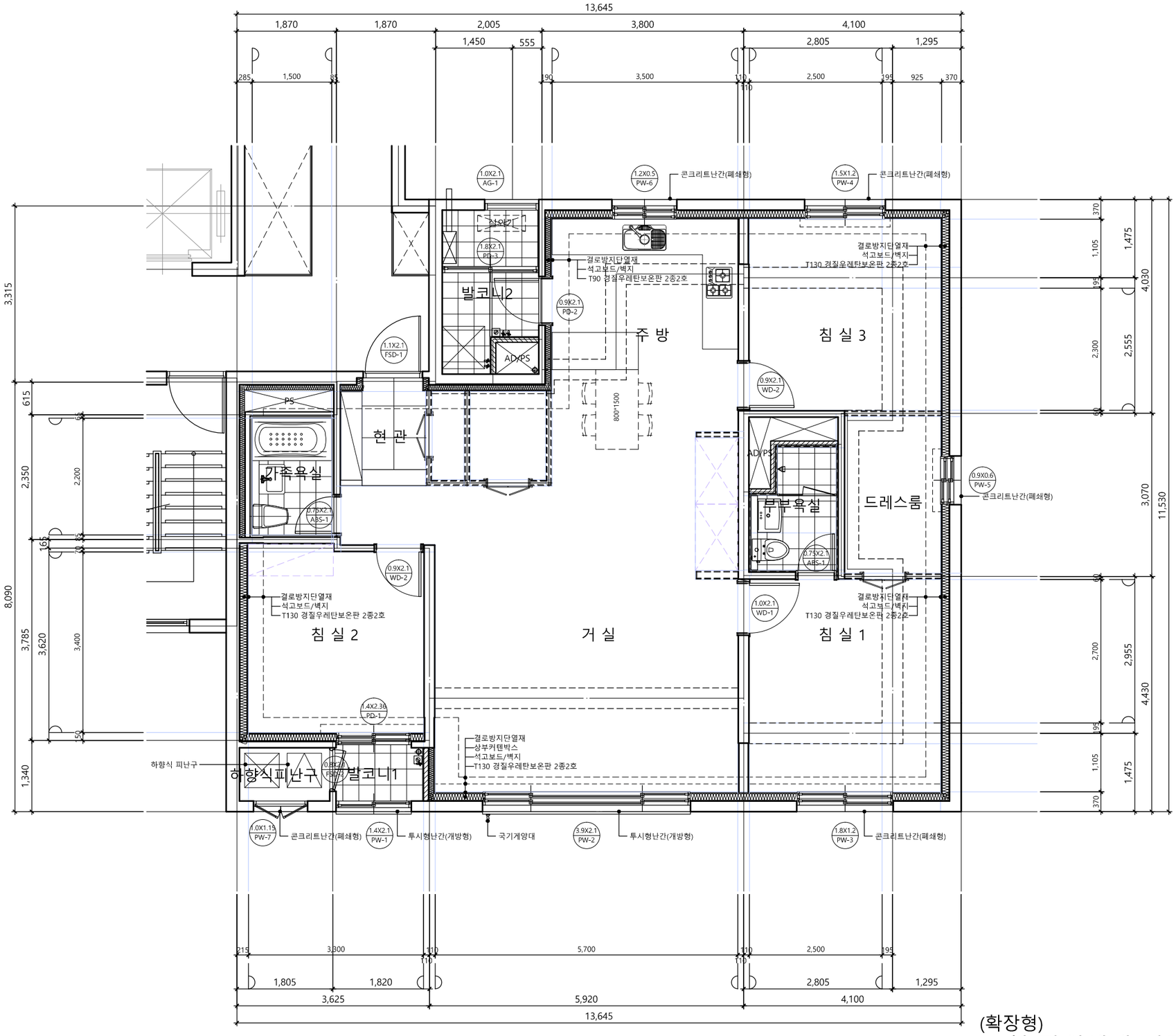

(확장형)

84형 단위세대 평면도

축 척 A1:1/ 40, A3:1/ 80

Project Title

충주 연수동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공사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S & ENGINEERS
TEL.(062)528.8737 FAX.(062)528.9737

健 築 士 趙 淵 秀

특 기 사 항 Notes

1. 인테리어 마감사항은 건본주택 마감 기준을 우선함.
2. 재료마감표와 도면이 상이한 경우 재료마감표를 우선함.
3. 화장실, 발코니, 지하주차장 등 구배를 요하는 바닥마감은 구배에 따라 두께가 상이함.
4. 화장실, 샤워실의 바닥마감재는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설치 또는 미끄럼방지 마감 처리할 것
5. 공용홀과 진입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설치 또는 미끄럼방지 마감 처리할 것
6. 욕실난방의 경우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는 판넬히팅 제외.
7. ELEV홀 천장 마감은 세대 스프링 쿨러 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천장 마감은 불연재료 적용할 것)
8. 고정형 가구 및 거울(현관, 주방, 욕실, 드레스룸 등)이 설치되는 곳의 바닥, 벽 , 천장에는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아니함.
9. 각종 인증과 관련된 자재를 확인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것.
10. 확장형세대와 기본형세대가 접하는 부위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단열조치할 것. (단, 기본형세대 발코니부분 설치)
11. 선흐름의 개소와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12. AD/PD 바닥은 배관슬리브 매입후 콘크리트로 타설할 것.
13. AD/PD 내부 설비배관설치 후 배관 주변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충진할 것.
14. 세대내에 설치되는 통신단자반, 세대분전반등은 인테리어도면 및 전기도면을 참조하여 시공할 것.
15. 지상2층 하향식피난구에 완강기설치.

승 인 APPROVED BY	-
검 사 CHECKED BY	-
설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작 성 일 DATE	2024. 08.
축 척 SCALE	A3 : 1 / 8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확장형) 84형 단위세대 평면도
분 류 번 호 DRAWING NO.	-
도 면 번 호 SHEET NO.	A - 102